한화손보
Carrot

한화손보

캐롯 자동차보험
개인용

약관 이 약관은 보험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부통제 절차를 거쳐 작성한 자료입니다.

확인필-제2026-자동차상품-약관04016C-전사(26.08.18~ 27.08.17) | **개정** 2026.10.01

한화손보 캐롯 모바일 앱을 만나보세요!

한화손보 캐롯 고객센터

1566-0300

www.carrotins.com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제작 자동차상품파트 / **제작일자** 2026.10.01

한화손보
Carrot

한화손보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약관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눈에 보는 약관의 구성

1. 약관 이용 가이드북

약관을 쉽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의 구성, 쉽게 찾는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지침서

2. 약관 요약서

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시각적 방법을 이용하여 간단히 요약한 약관

3. 보험약관(주계약&특약)

보통약관 자동차보험의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계약조항을 정한 기본약관

특별약관 보통약관에 정한 사항 외 선택가입한 보장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 이용

QR(Quick Response) 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사진촬영하면 상세 내용 등을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해설 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보통약관 기준)

보험약관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페이지 및 영상자료 등을 안내해 드리오니,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을 받으신 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하는 손해 (본인이 가입한 특별약관을 확인하여 가입특별약관별 보상하는 손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인배상 I	제3조	P.46
	대인 II ·대물배상	제6조	P.47
	자기신체사고	제12조	P.5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17조	P.53
	자기차량손해 ※ 차대차/단독 사고 설명 필요	제21조	P.56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본인이 가입한 특별약관을 확인하여 가입특별약관별 보상하는 않는 손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인배상 I	제5조	P.46
	대인 II ·대물배상	제8조	P.47
	자기신체사고	제14조	P.5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19조	P.54
	자기차량손해 ※ 차대차/단독 사고 설명 필요	제23조	P.56
청약의 철회	제41조(청약의 철회)		P.69
계약 전 알릴 의무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P.71
계약 후 알릴 의무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P.71
사고발생 시 의무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P.71
보험계약의 취소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P.74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제52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P.74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P.76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꿀팁

아래 5가지 꿀팁을 활용하시면 약관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눈에 보는 약관의 구성

1. 약관요약서 활용
시각화된 '약관요약서'를 활용하시면 계약 일반사항, 가입시 유의사항, 민원사례 등 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2. 용어정의, 용어설명 및 예시 참고
약관 내용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용어의 정의, 약관본문 내 용어설명 및 예시 등을 참고하시면 약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제1조(용어의 정의) P.41

3. QR코드 스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약관해설 동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등을 쉽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4. 법규해설집 항목 활용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항목을 활용하시면 약관에서 인용한 법률 조항 및 규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5. 약관 주의깊게 확인
약관조항 등이 음영·컬러화 되거나 진하게 된 경우 보험금 지급 등 약관 주요 내용이므로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한화손보 캐롯 홈페이지 (www.carrotins.com), 모바일 App으로 문의
※ 보험상품 거래단계별 필요한 금융꿀팁 또는 핵심정보 등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탈 (FINE, www.fine.fss.or.kr)에서 확인

한화손보
Carrot

한화손보

약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약관요약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주요 보장내용 등에 대해서
요약하였습니다.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보상관련 실제적용 및 세부내용은 약관 본문에 따라
적용되오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꼭 알아두세요

의무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으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을 의미합니다.

대인배상 I + 대물배상(2천만원)

구분		보상한도
대인배상 I	사망	1.5억원
	부상	3,000만원
	후유장애	1.5억원
대물배상		2,000만원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가입지연 등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발생한 경우, 자배법 제48조 3항 1호에 근거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꼭 유의하세요!

알아두실 사항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대인 I	대물	대인 I	대인 I I	대물	대인 I	대물
10일이내	1만원	5천원	3만원	3만원	5천원	6천원	3천원
10일초과 1일당	4천원	2천원	8천원	8천원	2천원	1천2백원	6백원
최고한도	60만원	30만원	100만원	10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자동차보험 가입을 감사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계약 시 청약서, 상품설명서 및 보험증권을 받으셨나요?
아래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범위와 연령에 대해 확인하셨나요?

계약관련 서류에 자필서명을 하셨나요?

차량모델, 차량번호, 추가 장착 부속품 등이 정확히 기재 되어 있나요?

고객님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정확하게 기재 되어 있나요?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와 보상 받을 수 없는 사고에 대해 확인 하셨나요?

주요담보 별 가입금액에 대해서 확인하셨나요?

특약에 관한 사항은 확인하셨나요?

※ ECO 전자문서 사용약정 특별약관에 가입하신 경우, 전자매체(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증권/약관 등 계약관련 서류를 드립니다.

아래의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1. 다른 보험회사에 동일차량으로 중복 계약 체결 유무
2. 피보험자동차 및 실소유자에 관한 사항
3. 기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청약서 기재 사항

알아두실 사항

보험가입시 청약 내용은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시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가능자 연령과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입하셨나요?

보험 가입 시 운전가능자의 연령과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입하셨나요?

운전자 연령/범위 제한 특별약관은 사고 시 보장을 받게 될 대상을 한정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할인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증권을 받으시면 반드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단, 운전가능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인배상 I 을 제외한 담보는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가능한 운전자연령한정 특별약관 안내

- 만48세이상 – 만65세이하
- 만33세이상 – 만55세이하
- 만48세이상
- 만43세이상
- 만35세이상
- 만30세이상
- 만28세이상
- 만26세이상
- 만24세이상
- 만22세이상
- 만21세이상
- 전연령

운전자범위제한 특별약관별 운전가능자

고객님이 가입한 운전자범위제한 특별약관에 따라 운전가능자가 달라집니다. 보험증권에서 운전가능범위를 꼭 확인해주세요.

운전자 / 특별약관	본인	배우자	부모/배우자부모	자녀/사위며느리	형제/자매	지정 1인
기명1인	○	×	×	×	×	×
기명1인+1인	○	×	×	×	×	○
기명1인+자녀	○	×	×	○	×	×
자녀	×	×	×	○	×	×
부부	○	○	×	×	×	×
부부+1인	○	○	×	×	×	○
부부+자녀	○	○	×	○	×	×
가족	○	○	○	○	×	×
가족+1인	○	○	○	○	×	○
가족+형제자매	○	○	○	○	○	×
누구나	○	○	○	○	○	○

자주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운전자 범위를 착각하는 경우

**가족운전자 한정 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했는데
형제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형제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가족의 의미와 특별약관에서 의미하는 가족의 범위가 다릅니다. 형제 및 자매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정상적인 보상처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대인배상 I 에 대해서만 보상)

만33세~만55세 연령한정을 선택했는데 사고시 만 56세인 경우

**가입시에는 만55세여서 만33세~만55세
연령한정을 선택했습니다.
사고발생시에 만56세라면 문제가 되나요?**

아니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을 하셨던 시점에 만55세이셨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계약 갱신시에는 만48세~65세 연령한정특약 또는 만 48세이상 연령한정특약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보험기간 중
변경사항은 없으신가요?

보험기간 중 계약관련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연락주세요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자동차보험 주요 우편물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변경된 주소지와 연락처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기존 자동차를 팔고 새차를 구입하는 경우

새로 구입한 자동차와 기존 자동차를 대체하셔야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 가능 범위 이외의 분이 운전하는 경우

추가로 운전하시려는 분의 연령/기명피보험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장착한 부속품이 있는 경우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등 추가 장착한 부속품을 보상 받기 위해서는 보험 회사에 별도 통지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객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과 다르거나 혹은 변경해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 모바일 앱이나 고객상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화손보 캐롯 홈페이지 www.carrotins.com

Carrot 한화손보

알아두실 사항

위와 같은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받지 못할수도 있으며, 변경사항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님 사고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01 **즉시 차량을 멈추고 부상자를 구호해주세요**

차량을 정차하고 사고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부상자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필요시 응급처치를 해주세요)

02 **사고정황 증거를 확보해 주세요.**

사고현장 촬영 및 목격자를 확보해주세요. (연락처, 명함 등)
사고차량 위치를 도로상에 표시해주세요. (스프레이 등)
블랙박스를 장착하셨다면, 영상을 확보해 주세요.

03 **교통질서를 회복해주세요.**

2차사고 예방,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해 주세요.

04 **보험회사 및 경찰서에 신고해 주세요.**

고객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과 다르거나 혹은 변경해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 모바일 앱이나 고객상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화손보 캐롯 홈페이지 www.carrotins.com

Carrot
한화손보

사고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고접수 및 보상담당자 지정
사고상담 및 안내를 해드리며, 보상서비스 담당자를 지정해드립니다.

사고조사 및 피해사항 확인
피해자 또는 고객님을 만나 사고원인, 과실비율 등을 확인합니다.
치료과정 및 수리과정을 확인하고 합의금 등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보험금 결정 및 지급 후 종결안내
피해자와 합의하여 치료비, 수리비 등을 지급하고 해당내용은 고객님께 안내해 드립니다.
종결시 사고처리결과를 고객에게 최종안내해 드립니다.

과실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되며 세부내용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혹시 보험기간 중 변경사항은 없으신가요?

보험계약 만기일을 안내해 드립니다

한화손보 캐롯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자동차보험(의무보험 포함)을 가입한 차량의 보험계약이 만기(종료)될 경우 보험 만기 전 2회에 걸쳐 고객님에게 만기 사실을 이메일로 안내해드립니다.

구분	안내 시기	안내방법	안내대상
1차 안내	만료일 75일 – 30일전	이메일	기명피보험자
2차 안내	만료일 30일 – 10일전	이메일	기명피보험자

만기일 안내

※ ECO 전자문서 사용약정 특별약관에 따라 이메일로 만기 안내가 발송됩니다.
※ 보험기간 2개월 미만의 계약은 안내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구성을 확인하세요!

자동차보험은 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에 형성되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보통약관과 보통약관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선택이 가능한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약관

타인에 대한 배상

상대방이 다쳤을 때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상대방 차량 등의 손해

대물배상

고객님의 보상

고객님이 다쳤을 때

자기신체사고

고객님 차량 손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 차량에 의해 다쳤을 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별약관

운전가능자 제한 특별약관

보험료 할인 특별약관

고보장 특별약관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보상내용 등을 보충,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것으로 고객님이 원하는 특별약관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친 경우
대인배상 Ⅰ, Ⅱ

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고객님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Ⅰ 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의무보험으로서
자동차 보유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강제) 보험입니다.

보장내용 및 지급한도

구분	보장내용	지급한도
사망	사망자 1인당 실제손해액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지급	최저 2천만원 – 최대 1억5천만원
부상	부상등급별 실제손해액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지급	50만원(14급) – 3천만원(1급)
후유장애	장애등급별 실제손해액 (위자료, 상실수익액, 간호비)지급	1천만원(14급) – 1억5천만원(1급)

대인배상 Ⅱ

대인배상 Ⅱ 는 계약체결 시 정한 가입금액을 한도로「대인배상 Ⅰ」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 보장내용은 대인배상 Ⅰ 과 같습니다.

상대방 차량/재물이 파손된 경우 대물배상

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고객님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대물배상

대물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의무보험(최소 가입금액 2천만원)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강제) 보험입니다.

구분	보장내용	지급한도
대물배상	수리비용, 교환가액, 렌트비(대차료),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등 보상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2천만원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은 3/5/7천만원 또는 1/2/3/5/10/20억원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상해를 입은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사고로 고객님 또는 고객님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사고 (공제액 없음) 인지 또는
상대방이 있는 쌍방사고 (공제액 존재) 인지에 따라 보장내용이 달라집니다.
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고객님의 신체에 발생한 상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의학적 소견(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에 계약체결 시 정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고 유형별 보장내용 및 지급한도

구분	보장내용	지급한도
쌍방사고 (공제액 존재)	부상/후유장애 급수별 가입금액 한도 사망 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손해액에서 공제액 차감 후 지급	1인당 한도적용
단독사고 (공제액 없음)	부상 상해등급(1–14급)별 한도 내 실제 치료비 사망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 정액 지급 장애 장애등급(1–14급)별 가입금액 정액 지급	

주) 공제액: 상대차량 대인배상 등 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주) 실제손해액: 약관상'대인배상 지급기준'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고객님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기차량손해

자동차 사고로 가입하신 자동차에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보장내용

자기차량손해(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포함)는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침수,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손해와 차량의 도난(부분도난 제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지급

고객님 차량에 생긴 직접 손해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차량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해 드립니다.

가입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고객님이 부담하실 금액 = 보험금

※ 자기부담금: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하는 금액

자기부담금 산정예시

〈예시조건〉 물적할증기준금액 200만원, 자기부담금 20%(최고한도 50만원) 가입시

손해액	손해액의 20%	자기부담금 최저 – 최고 한도	고객님 자기부담금
200만원	40만원	20만원 – 50만원	40만원
400만원	80만원		50만원(최고한도)

가해차량이 무보험인 경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고객님께서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등에 의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차량 탑승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가 아니거나 고객님이 소유하지 않은 자동차이면서 다음 중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면 무보험자동차로 봅니다.

1. 대인배상 II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2. 대인배상 II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3. 고객님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담보 가입금액보다 낮은 대인배상 II(공제계약 포함)에 가입한 자동차
4. 뺑소니 자동차

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2억/3억/5억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주요 면책사항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꼭 참고하세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운전가능 연령/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승객을 태우거나, 물건을 실어다 주는 행위를 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유상운송 면책)

※ 단, 유상운송위험담보특약 가입시 보상

자동차를 시험용으로 운행하거나 경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담보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의 해당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특별약관

1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2 보험료를 할인 받으실 수 있는 특별약관

3 법률비용 지원 특별약관

4 자기신체사고 확대 보상 특별약관

5 차량손해 확대 보상 특별약관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16개 서비스 항목)

보험기간 중 총 6회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경우에는 추가로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한
긴급 견인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요청하는 곳까지 30km 한도로 견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150km 한도)	·한도 초과시 고객님 실비 부담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
비상 급유	연료 소진으로 운행 불가 시 1일 1회, 3리터 한도로 급유 (LPG차량의 경우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충전소까지 견인)	·보험기간 중 총 2회 한도 ·한도 초과 시 고객님 실비 부담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는 견인 제공
배터리 충전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 배터리 충전 (배터리 교환 시 고객님 실비 부담)	·차량 Key 배터리, 연료전지 등은 해당되지 않음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는 견인 제공
타이어펑크 수리 및 교체 서비스	지면에 닿는 타이어 트레드 부분 (접지면)이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구멍이 뚫린 단순 펑크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수리 서비스 제공 (타이어펑크 1개당 서비스 1회 차감)	·야간, 기상상황 등으로 펑크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거나 특수장비가 필요한 경우 ·자연마모로 인한 펑크 또는 찢어진 경우 ·기타 현장에서 수리가 곤란한 경우
	타이어 펑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예비 타이어로 교체 서비스 제공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
잠금 장치 해제	자동차 열쇠를 분실하였거나 실내에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 제공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 ·외산차량 또는 국산차량의 특수 잠금장치, 사이드에어백 장착 등으로 해제가 불가능한 경우 별도 업체를 통해 서비스 제공 가능 (다만, 추가비용은 고객님 실비 부담)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비
긴급 구난 서비스	도로 이탈 또는 장애물로 인하여 자력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구난 서비스 제공	·별도의 구난 장비 필요시 발생비용은 고객님 부담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

※ 보험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서비스 횟수를 총 3회 제공합니다.
※ 약관에서 정한 서비스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거나 고객님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긴급출동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각 서비스별 세부사항은 특별약관 본문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특별약관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특별약관

퍼마일 특별약관(월정산형)

캐롯 플러그 및 계기판 주행거리 사진을 통해 주행거리를 측정하고 매월 보험료는 기본료와 월간 주행거리에 따른 km당 보험료로 산정됩니다.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 (후정산)

보험 만기 시점, 보험기간동안 실제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티맵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

피보험자의 운행기록을 분석하여 생성된 안전운전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최대 20%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과 중복 가입 불가

티맵 안전운전점수	연령	할인율
80점 이상 ~ 85점 미만	45세 이하	6.8%
	46세 이상	0.9%
85점 이상 ~ 90점 미만	45세 이하	9.6%
	46세 이상	3.8%
90점 이상 ~ 95점 미만	45세 이하	15.6%
	46세 이상	10.2%
95점 이상	45세 이하	20.0%
	46세 이상	14.9%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기록을 분석하여 생성된 안전운전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최대 25.8%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점수	연령	할인율
70점 이상 ~ 85점 미만	35세 이하	18.0%
	36세 이상	14.2%
85점 이상 ~ 90점 미만	35세 이하	23.2%
	36세 이상	19.7%
90점 이상 ~ 95점 미만	35세 이하	24.2%
	36세 이상	20.7%
95점 이상	35세 이하	25.8%
	36세 이상	22.4%

※ 현대(블루링크), 기아(KIA Connect), 제네시스(Genesis Connected Services) 가입차량 대상

자녀 할인 특별약관

만 10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태아를 임신한 경우 최대 32.3%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한정 특약	자녀 연령	자녀수	피보험자 성별	할인율
부부, 기명1인	태아	1자녀	남성	19.6%
			여성	28.4%
		2자녀이상	남성	23.9%
			여성	32.3%
	만0세	1자녀	남성	10.3%
			여성	20.1%
		2자녀이상	남성	15.1%
			여성	24.4%
	만1세~만4세	1자녀		4.2%
		2자녀이상		9.3%
	만5세~만10세	1자녀이상		5.2%
기타	태아~만1세	1자녀이상		3.3%

주) 자녀연령은 피보험자의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함

차선이탈 경고장치 장착 할인 특별약관
전방충돌 방지장치 장착 특별약관

최초 출고시 차선이탈 경고장치와 전방충돌 방지장치가 모두 장착된 경우 평균 5.2%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연식별로 할인율 상이

블랙박스 할인 특별약관

사고발생시 고객님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블랙박스의 영상을 보험회사에 송부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6~4%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연식별로 할인율 상이

실버 안전운전자 우대 특별약관

만65세 이상 기명피보험자가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특별약관
법률비용 지원 특별약관

형사합의금 지원 특별약관 Ⅱ

① 사망사고
② 중과실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해당하는 사고)
다만, 음주, 무면허, 도주, 마약·약물 사고 제외
③ 기타 중상해를 입힌 사고

구분			일반형	고급형	VIP형	VVIP형
1인당 지급한도	사망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2억원
	상해 등급	1~3급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5억원
		4~5급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8,000만원
		6~7급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8~14급	–	–	100만원	100만원

변호사선임비용 지원(경찰조사 포함) 특별약관

①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금
피보험자가 구속 또는 공소제기된 경우 :

구분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보상한도
일반형	500만원 기준	500만원

② 경찰조사시 변호사 동행비용 지원금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를 입힌 사고로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약식 기소 또는 불기소 된 경우 1사고당 300만원 한도로 지급

벌금비용 지원(스쿨존 및 대물 확대형) 특별약관

① 대인 벌금비용 지원금
확정판결에 의해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1사고 당 2천만원 한도로 지급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인 경우 3천만원 한도 지급
② 대물 벌금비용 지원금
확정판결에 의해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1사고 당 500만원 한도로 지급

주요 특별약관
법률비용 지원 특별약관

장기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고객님께서 장기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기명피보험자 제외형' 가입시 58.4% 할인된 보험료로 운전가능 범위내 다른 피보험자의 법률비용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기본(예시)

운전자 / 특별약관	기명 피보험자	배우자	부모/ 배우자부모	자녀 / 사위 며느리	기타
기명1인	○	×	×	×	×
부부	○	○	×	×	×
가족	○	○	○	○	×
누구나	○	○	○	○	○

※ 장기 운전자보험 가입한 경우 보험금 지급시 비례 보상 (중복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기명피보험자 제외(예시)

운전자 / 특별약관	기명 피보험자	배우자	부모/ 배우자부모	자녀 / 사위 며느리	기타
기명1인	면책 (장기 운전자 보험 가입)	×	×	×	×
부부		○	×	×	×
가족		○	○	○	×
누구나		○	○	○	○

주요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확대 보상 특별약관

간병비 지원 특별약관

고객님께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간병지원금」을 특별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대중교통상해 특별약관 Ⅱ

고객님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특별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보상 특별약관

고객님께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 중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상급병실료 차액」을 특별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주말 사망 및 후유장애 확대 특별약관

고객님께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주말 및 휴일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특별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녀케어 특별약관

고객님(기명피보험자)의 만 18세 이하 자녀가 피보험자동차 또는 다른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교통사고 상해 위로금」, 「골절사고 지원금」, 「교육보충지원금」, 「스쿨존 사고 위로금」을 특별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성형 및 치아보철 지원금 특별약관

고객님께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성형지원금』, 「치아보철지원금」을 특별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LADY 케어 / LADY 교통상해 특별약관

① LADY 케어: 여성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탑승 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아래 항목에 대해 특별약관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
② LADY 교통상해: 여성 피보험자가 **보행 중이거나 타차 탑승 중**에 상해를 입은 경우 아래 항목에 대해 특별약관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

건강회복지원금	물리치료지원금	휘트니스지원금	상급병실료 차액지원금
성형지원금	치아보철지원금	사망위로금	후유장애위로금

주요 특별약관
차량손해 확대 보상 특별약관

교통비지원 특별약관

고객님의 차량이 자기차량손해보험금 지급되는 사고로 인하여 수리를 하게 되는 경우 보험가입시 정해놓은 교통비를 수리비 인정 기간 동안 30일 한도로 지급합니다.

예) 교통비 지원 3만원을 가입하였고 사고로 10일간 차량을 수리 받게 되는 경우'3만원×10일=30만원'을 지급

전손시 신규등록 및 검수비용 지원 특별약관

고객님의 차량이 자기차량손해보험금 지급되는 사고로 인하여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7% 한도로 취·등록세 및 신규차량등록시 발생하는 검수비용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차량운반비용 지원 특별약관

고객님의 차량이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로 인하여 주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실제로 소요된 차량운반비용을 20만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차량 신가보상 특별약관

고객님 차량이 신차이고 보험기간 중 전부 손해가 발생하거나 수리비용이 보험가입금액의 70%이상으로 고객님께서 차량 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신차가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기차량손해 초과수리비 보상 특별약관

고객님 차량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어 사고 직전의 상태로 되돌리는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사고발생 시점의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험가액의 150% 한도 내에서 초과되는 수리비를 보상합니다.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특별약관

고객님이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로 다른 자동차가 파손되었을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른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보상합니다.

자동차보험료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동차보험료는 과거 계약 및 사고자료의 통계를 바탕으로 하여 산출된 기본보험료에 개별 가입 피보험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기본보험료 × 특별약관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특별요율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등

기본보험료 ×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특별약관요율 ×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별약관,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별약관 등을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가입자 특성요율 ×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 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특별요율 ×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를 경우 적용하는 요율

우량할인·불량할증 요율 ×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자동차보험료 줄이는 방법

1. 운전자 연령이나 범위를 한정하여 가입
2.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 특별약관에 가입

알아두실 사항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통법규를 준수한 안전운행만이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과 우량할인·불량할증율의 할인과 더불어 보험료를 절약하는 이상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화손보
Carrot

한화손보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알아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을 확인하세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중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시 보상처리 받을 수 있나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중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시 제한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사고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 사고	무보험차 상해	자기차량 손해
○	○	○	○	○	×

②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뺑소니)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 사고	무보험차 상해	자기차량 손해
○	○	○	○	○	○

※ 사고부담금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2천만원 이하 손해)	대물배상 (2천만원 초과 손해)
한도내 전액구상	1억원	한도내 전액구상	5천만원

주) 대인배상 Ⅰ 1인당 기준, 대인배상 Ⅱ 및 대물배상 1사고당 기준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 중 사고가 나는 경우 보상받지 못하나요?

운전자 연령/범위 특별약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소한의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대인배상 Ⅰ 담보에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주묻는 질문을 확인하세요!

운전가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차량의 운전을 맡기고 싶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특정기간 동안 운전가능 범위 외의 사람에게 운전을 맡기길 원하시면 계약담당자 또는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시어「단기 운전자확대 특별약관」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운전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보험료가 발생됩니다.

보험증권상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로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적은 없는데, 보험 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관공서 및 법인체 등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 외국에서의 보험가입 기간, 다른 자동차보험계약에서「보험가입경력 추가 인정자(종(從)피보험자」로 등록되었던 이력을 제출하시면 해당 기간의 보험 가입경력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일증권이란 무엇인가요?

2대 이상의 차량(개인승용 전차종,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차량들의 보험종기를 일치시켜 동일한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것으로서, 보험 만기일 관리 및 사고 발생 시 개별 할인할증 등급 산정 측면에서 유리한 제도입니다.

보험 가입 시 차량가액은 어떻게 산정 되나요?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기준가액표상에 해당 차량이 없는 경우 시중거래가격 등을 참조하여 차량가액을 결정합니다.

보험기간 중 자동차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고객님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임의담보에 대해서 해지가 가능하며, 자배법에서 가입이 강제화된 의무담보에 대해서는 약관에 정해진「의무보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 기존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 담보에 대해서는 해지 환급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주묻는 질문을 확인하세요!

보험기간 1년 미만(단기계약)으로 가입했을 때, 동일한 조건의 1년 보험료를 가입일수로 계산한 것보다 비싸게 나오는데,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다른가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요율서 상에서 정한「단기요율」표에 의해 보험료를 계산하여, 1년 정상계약의 가입일수에 따른 일할계산방법보다 보험료가 높게 책정됩니다.

보험기간	7일까지	15일까지	1월까지	45일까지	2월까지	75일까지	3월까지	105일까지	4월까지
단기요율	6%	10%	15%	18%	20%	25%	30%	35%	40%
보험기간	**135일까지**	**5월까지**	**6월까지**	**7월까지**	**8월까지**	**9월까지**	**10월까지**	**11월까지**	**12월까지**
단기요율	45%	50%	60%	70%	80%	85%	90%	95%	100%

※ 예시: 보험가입기간 70일 / 보험기간 1년 적용보험료= 100만원
일할계산: 100만원 X (70/365일) = 약19만원
단기요율: 100만원 X 25%(75일까지) = 25만원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가입대상 차량입니다. 장기간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을 계획인데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나요?

자동차를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업무 관할 관청에 사유를 신고 후 승인을 받아 등록증과 번호판을 관청에 영치하면 보험 가입이 면제 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자배법에서 정한 보험가입 면제 사유]

① 해외근무 또는 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②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운전이 불가능 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 현역(상근 예비역 제외)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약관 주요용어를 확인하세요!

구분		설명
ㄱ	가족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를 말합니다. 주) 자동차보험에서 형제나 자매, 조부모, 손자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 계약	공제조합이 각자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자본으로 조합원의 자동차사고 시에 공제금을 지급하여 돕는 공제사업에 의한 계약을 말합니다. 예) 버스공제, 전세버스공제, 택시공제, 개인택시공제, 화물공제조합
	기명 피보험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피보험자동차)에 대해 소유 · 사용 ·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 등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ㄴ	납입최고	보험계약자 등에게 미납보험료를 납입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일을 말합니다.
ㅁ	면책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전쟁, 지진, 태풍 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등 특정한 사안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하는 것입니다.
ㅂ	보통약관	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에 대해 구체적인 보상 내용 및 보험계약의 성립에서 소멸까지의 보험계약자와 보험 회사 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한 내용을 말합니다.
	보험가액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 가액표에 따른 차량가격으로 중고차시세 등의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금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액(보상한도액)입니다.

약관 주요용어를 확인하세요!

구분		설명
ㅂ	보험금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약관상 보상액입니다.
	보험료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자가 납입하는 금액입니다.
ㅅ	상해등급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을 정한 등급입니다.
ㅈ	자기 부담금	보험금 지급시 일정금액에 대해 보험회사가 아닌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장사업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ㅌ	특별약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선택해서 가입함으로써 보통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에 추가로 보상 또는 비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을 말합니다.
ㅍ	피보험자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ㅎ	후유장애 등급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의 구분과 보험금 등을 정한 등급입니다.

캐롯 자동차보험 개인용 약관 목차

신용정보 제공 · 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1**

캐롯 자동차보험 개인용 보통약관 **3**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3
제1조(용어의 정의) 3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5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7
제1장 배상책임 7
제1절 대인배상Ⅰ 7
제3조(보상하는 손해) 7
제4조(피보험자) 7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7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7
제6조(보상하는 손해) 7
제7조(피보험자) 7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8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9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9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9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 9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10
제1절 자기신체사고 10
제12조(보상하는 손해) 10
제13조(피보험자) 10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1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11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11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2
제17조(보상하는 손해) 12
제18조(피보험자) 12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3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14
제3절 자기차량손해 14
제21조(보상하는 손해) 14
제22조(피보험자) 15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5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16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18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18
제25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8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18
제27조(제출 서류) 19
제28조(가지급금의 지급) 19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20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20
제30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20
제31조(제출 서류) 21
제32조(가지급금의 지급) 21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22
제33조(보험금의 분담) 22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22
제35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2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23
제37조(공탁금의 대출) 23

제4편 일반사항 24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24
제38조(보험계약의 성립) 24
제3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24
제40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25
제41조(청약의 철회) 25
제42조(보험기간) 26
제43조(사고발생지역) 26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26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26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27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27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27
제47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28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28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28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29
제51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29
제52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29
제52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30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30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31

제4장 그 밖의 사항 32
제55조(약관의 해석) 32
제56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32
제57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32
제58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32
제59조(보험사기행위 금지) 32
제60조(분쟁의 조정) 32
제61조(관할법원) 33
제62조(준용규정) 33

캐롯 자동차보험 개인용 특별약관 **34**

제1편 보험료 납입방법 34
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34
2)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35
3)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35

제2편 운전가능자 제한 37
제1장 운전자 연령제한 37
1) 운전자연령 만21/22/24/26/28/30/35/43/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37
2) 운전자연령 만33세이상 만55세이하 한정운전 특별약관 37
3) 운전자연령 만48세이상 만65세이하 한정운전 특별약관 38

제2장 운전자 범위제한 39
1)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39
2)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40
3)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41
4) 가족과 기명운전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41
5) 가족과 형제・자매 한정운전 특별약관 42
6) 기명피보험자 1인과 기명운전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43
7) 부부운전자와 기명운전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44
8)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45
9) 부부와 자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46
10) 기명피보험자 1인과 자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47
11) 자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47

제3편 운전가능자 확대 49
1)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49
2) 단기 운전자확대 특별약관 II 50
3) 단기 운전자확대 특별약관(만21세이상 가족형) 50

제4편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 52
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 52
2) 간병비 지원 특별약관 ··· 53
3) 대중교통상해 특별약관 II ··· 54
4) 상급병실료 차액보상 특별약관 ··· 56
5) 성형 및 치아보철 지원금 특별약관 ··· 56
6) 주말 사망 및 후유장애 확대 특별약관 ··· 57
7) 자녀케어 특별약관 ··· 58
8) LADY케어 특별약관 ··· 58
9) LADY 교통상해 특별약관 ··· 63

제5편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 67
1)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 67
2) 자기차량손해 초과수리비 보상 특별약관 II ··· 68
3)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특별약관 ··· 68
4) 차량신가보상 특별약관 ··· 71
5)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별약관 ··· 72
6) 전기자동차 충전 중 사고 보상 특별약관 ··· 72
7) 교통비지원 특별약관 ··· 73
8) 전손시 신규등록 및 검수비용 지원 특별약관 ··· 74
9) 차량운반비용 지원 특별약관 ··· 75
10) 외제차운반비용 지원 특별약관 ··· 76
11)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 77
12) 차량기준가액 확대보상 특별약관 ··· 79
13) 실시간 렌터카 차량손해담보 특별약관 ··· 80

제6편 사고처리시 소요되는 비용 ··· 83
1) 형사합의금 지원 특별약관 II ··· 83
2) 변호사선임비용 지원(경찰조사 포함) 특별약관 ··· 85
3) 벌금비용 지원(스쿨존 및 대물 확대형) 특별약관 ··· 88

제7편 긴급출동 서비스 ··· 90
1) 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 ··· 90
1-1) 긴급 견인서비스 확대 추가 특별약관 ··· 94
1-2) 긴급 견인서비스 확대 추가 특별약관 (대형견인) ··· 95
2) 한화 긴급출동 플러스 서비스 특별약관 ··· 95
2-1) 긴급 견인서비스 확대 추가 특별약관 ··· 98
2-2) 긴급 견인서비스 확대 추가 특별약관 (대형견인) ··· 99
3) 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친환경자동차) ··· 99
4) 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친환경자동차)II ··· 101

제8편 녹색상품 ····· 105
1) 친환경부품사용 특별약관 ····· 105
2)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후정산) ····· 106
3) 평균주행거리 선할인 특별약관 ····· 109
4) ECO 전자문서 사용약정 특별약관 ····· 111
5) 퍼마일 특별약관 (월정산형) ····· 112
6) 퍼마일 보험료 분할납입 추가 특별약관 (월정산형) ····· 117
7) 퍼마일 커넥티드 카 서비스 추가 특별약관 ····· 120

제9편 기타 ····· 123
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 123
2)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 124
3)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 125
4)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 125
5) 다이렉트 나눔(서민우대) 특별약관 ····· 126
6) 실버 안전운전자 우대 특별약관 ····· 127
7)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특별약관 ····· 129
8)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 130
9)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 131
10)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추가 특별약관 ····· 132
11) 자녀 할인 특별약관 ····· 133
12) 차선이탈 경고장치 장착 할인 특별약관 ····· 134
13) 전방충돌 방지장치 장착 특별약관 ····· 135
14)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약관 ····· 136
15)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 ····· 138
16) 티맵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 ····· 139
17) 커넥티드카 할인 특별약관 ····· 141
18) 후측방충돌방지장치 장착 할인 특별약관 ····· 142
19) 어라운드뷰모니터 장착 할인 특별약관 ····· 144
20) 헤드업디스플레이 장착 할인 특별약관 ····· 145
21) 기간제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 146
22)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장착 할인 특별약관 ····· 147
23) 차량5부제 특별약관 ····· 148

캐롯 자동차보험 개인용 별표 ····· 151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 151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 162
[별표 3] 과실상계 등 ····· 166
[별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 168

[별표 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 169
[별표 6]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 170

[붙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 171
[붙임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 182
자동차보험 약관 법조문 ····· 189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신용정보 제공 · 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1. 금융서비스의 이용

고객의 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이용목적만으로 사용되며, 보험관련 금융서비스는 제휴회사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 3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신상품서비스 등은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화손보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고객 신용정보의 제공·활용 중단 신청

고객은 가입신청 시 동의한 본인정보의 제 3자에 대한 제공 또는 당사의 보험·금융상품(서비스) 소개 등 영업목적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제공·활용을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 인프라를 해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업무위탁회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한함으로서 금융회사의 업무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동의철회는 제한됩니다.

본인정보의 활용 제한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연락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대표전화 : 1566-0300
· 홈페이지 : www.carrotins.com
※ 단, 신규거래고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의 신청과 관련한 불편과 애로가 있으신 경우에는 당사의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 또는 손해보험협회 및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당사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손해보험협회 개인신용정보보호 담당자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전화	(02) 316-7485	02-3702-8500	(국번없이)1332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한화손보 정보보호팀	서울 종로구 종로1길 50, 케이트윈타워 B동 15, 16층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3.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 및 오류정보 정정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신용정보업감독규정」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당사 홈페이지(www.carrotins.com)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사 고객상담센터 및 지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권(법 제35조)**
고객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한 주요정보 내용 등을 통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권(법 제35조)**
고객은 신용정보업자 등이 보유하는 본인정보의 열람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의 정정 요구 및 정정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감위에 시정 요청 가능

고객은 본인 신용정보를 신용평가회사(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를 통하여 연간 일정범위 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주)	02-2122-4000	www.nice.co.kr
한국신용평가정보(주)	02-3771-1000	www.kisinfo.com
서울신용평가정보(주)	02-3445-5000	www.sci.co.kr
코리아크레딧뷰로(주)	02-708-1000	www.koreacb.com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국번없이 1332/ 인터넷 : www.fss.or.kr

☎ 고객상담센터 1566-0300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기요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3. **마약 또는 약물 등**:『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무면허운전(조종)**:『도로교통법』 또는『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5. **무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가.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나.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다.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는 그 각각의 자동차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 (『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가. 부분품: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나. 부속품: 자동차에 **정착**(*1) 또는 **장비**(*2)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3)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1)하거나 **장비**(*2)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4) 부속기계장치
   다. 부속기계장치: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1) **정착**: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장비**: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송수신장치(예: 하이패스 단말기)

7. **운전(조종)**:『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제148조(벌칙) 및 제148조의2(벌칙)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운행**: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9. **음주운전(조종)**:『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 **의무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11. **자동차보유자**: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12. **자동차 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합니다.
13.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나.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라. 사용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마. 운전피보험자: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14. **피보험자동차**: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15.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가. 피보험자의 부모: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 피보험자의 자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16. **휴대품, 인명보호장구 및 소지품**
    가. 휴대품: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

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나. 인명보호장구 : 외부충격으로부터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특수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승차용 안전모 또는 전용의류(*1)를 말합니다.

다. 소지품: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2)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3)

《용어풀이》

(*1) 예: 바이크 전용 슈트, 에어백 등 (라이더자켓・팬츠・부츠 등 이와 유사한 일반의류는 제외)

(*2) **정착**: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3) 예: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17.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8. 보험가액

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나. 보험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19. 마약·약물운전: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0. 새 부분품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신부품(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이나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중 사용되지 아니한 부품)을 말합니다.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1.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의보험: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나.『대인배상Ⅱ』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다.『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나.『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다.『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④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예 시						
납입할 보험료	=	**기본 보험료**	×	**특약 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특별 요율**	×	**우량할인 · 불량할증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구 분	내 용
기본보험료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특약요율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 시에 적용하는 요율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특별요율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Ⅰ

제3조(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Ⅰ』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대인배상Ⅰ』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자 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인배상Ⅰ』의 피보험자로 봅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배상Ⅱ』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7조(피보험자)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대인배상Ⅱ』와『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8.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인명보호장구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④ 제1항 제2호와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6호, 제8호를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배상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	비용	-	공제액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대물배상』: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모터, 구동용배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용어풀이》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Ⅰ』 한도 내 지급보험금

2.『대인배상Ⅱ』: 1사고당 1억원
3.『대물배상』
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대물배상』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 지급보험금
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대물배상』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 1사고당 5,000만원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1)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2)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용어풀이》

(*1) '**상해**'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물체'**라 함은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제13조(피보험자)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조(피보험자)의『대인배상 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2. 제1호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1)

《용어풀이》

(*1)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의 부모 :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2. 피보험자의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3. 피보험자의 자녀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 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후유장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 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자기신체사고』의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 보험금	=	실제 손해액	+	비용	-	공제액

1. '실제손해액'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2.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1) 포함) 및 『대인배상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은 금액은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업무상 재해 등)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다만, 제3호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1) **'정부보장사업'**이라 함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차),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운행하던 자동차(무보험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17조(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1)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18조(피보험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1)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제1호, 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1) **'자동차 취급업자'**라 함은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자동차를 배송하는 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합니다.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1)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용어풀이》
(*1)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보험금	=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용	-	공제액

1. '지급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에 의 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나.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 피보험자가 탑승 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라.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마.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용어풀이》

(*1) **'정부보장사업'**이라 함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차),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운행하던 자동차(무보험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제3절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①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에서 정한 기준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일방과실사고**(*1)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 **경미한 손상**(*2)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3)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1) '**일방과실사고**'라 함은 쌍방과실이 확정된 경우를 제외한 사고를 말합니다.

(*2) **'경미한 손상'**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 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예 : 외장부품의 코팅, 색상 등의 손상에 대한 도색, 판금으로 복원이 가능한 경우 등)

(*3) '**품질인증부품**'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②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는 사고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1. **다른 자동차**(*1)와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단, 전부도난이 아닌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1) **'다른 자동차'**라 함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말함)와 사고발생시의 운전자 또는 소유자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만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 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 중인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제22조(피보험자)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1)로 인한 손해

《용어풀이》
(*1)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1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1)
    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용어풀이》
(*1)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고용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를 포함합니다.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보험금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1.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다.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으로 교환수리하는 경우에는 조달 가능한 새 부분품 중 조달기간 및 조달가격 등을 고려할 때 비용이 최소화 되는 부분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1)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라.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중요한 부분**이란, 엔진, 미션, 캐빈, 적재함, 바디 및 전기차의 모터, 감속기, 구동용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품을 말합니다.

2.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1)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4. 대물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사고 시 사고 당사자 간 과실이 모두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보상금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가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여 드리며,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게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범위에서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상대방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회사가 구상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이미 부담한 자기부담금과 실제 손해액에서 당해 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제로 산정된 자기부담금과의 차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최소 자기부담금 이상으로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하거나 대용품을 주는 것으로 보험금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1)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 시에 종료합니다.

④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1)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1)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25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종목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2.『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3.『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4.『자기차량손해』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제27조(제출 서류)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 차량 손해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1. 보험금 청구서	○	○	○	○	○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	○	○	○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		○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
6.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
7.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
8.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도난으로 인한 전손사고 시 말소 사실 증명서			○		
전손사고 후 이전매각 시 이전서류		○	○		
전손사고 후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		○	○		
9.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

제28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7조(제출 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4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⑥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⑦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금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31조(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1. 교통사고 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2. 손해배상청구서	○	○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제32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또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보험회사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⑥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31조(제출 서류)에 정한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33조(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보험금을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2.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나.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3. 피보험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③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5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①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제37조(공탁금의 대출)

보험회사가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38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함)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42조(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제3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통신판매 보험계약**(*1)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사이버몰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1.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2)을 하지 않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1) '**통신판매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제40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청약서 부본 및 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자료(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1조(청약의 철회)

① **일반금융소비자**(*1)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전문금융소비자**(*2)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3.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용어풀이》

(*1) **'일반금융소비자**'라 함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2) **'전문금융소비자'**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④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⑥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⑦ 보험회사가 제5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보험기간
1. 원칙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의무보험(책임공제를 포함)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보험기간을 유예할 경우 보험회사가 유예를 승인한 날부터 운행개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보험기간에서 제외하고, 해당 기간만큼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을 연장합니다.
2. 예외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1) 및 의무보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용어풀이》

(*1)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인이 맺은 보험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43조(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보험기간 유예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또는 신청 이후 유예기간의 원인 사실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기간 유예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출·퇴근 시 승용차 함께 타기 등) 및 손해의 정도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47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①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권리·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따릅니다.
2.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는 사망시점에서의 법정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 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되기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회사가 승인할 때에 상실됩니다.

② 보험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라 함은,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자동차 간에 교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교체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 일할계산의 사례

$$\text{기납입보험료 총액} \times \frac{\text{해당기간}}{365(\text{윤년}:366)}$$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1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52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 정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또는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제49조 (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을 맺은 경우
6.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9.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②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새로운 보험

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52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대해 해지 요구를 할 때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제3항 제1호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①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의한 계약해지는 의무보험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
   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때
   라.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마.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은 때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4.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항,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제4항,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제4항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 지난 경우

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하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1월이 지난 경우

5.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의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①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②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제39조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제52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3. 보험계약이 해지(제52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의무보험의 해지는 제외)
2. 보험회사가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⑤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⑥ 이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⑦ 보험회사가 제6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55조(약관의 해석)

①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56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① 보험회사는 제27조(제출서류) 제5호, 제6호의 배상의무자의 개인정보와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1항 제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의 가입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제57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58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59조(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0조(분쟁의 조정)

①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61조(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62조(준용규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 1 편 보험료 납입방법

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횟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조(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보험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② 제1항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5조(보험계약의 부활)
① 이 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사고카드 계약)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3)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지정은행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납입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자동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횟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입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약정이체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③ 제2항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 중에서 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를 자동이체납입할 경우의 초회보험료 약정이체일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책임개시일자의 이전의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④ 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보험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않습니다.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유예 및 납입최고)
① 보험회사는 분할보험료가 약정이체일에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약정이체일로부터 [첨부]의 납입유예기간91)을 둡니다. 보험회사는 이 납입유예기간 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에 대해서는 납입유예기간이 없으며, 책임개시일자 이전까지 초회보험료의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약정이체일에 분할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이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회사는 제1항의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10일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를 합니다.
④ 납입유예기간 말일까지 분할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 말일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제4조(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첨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

미납입 보험료 / 납입방법		2회 보험료	3회 보험료	4회 보험료	5회 보험료	6회 보험료
비연속 2회납						1개월
연속납	2회납	4개월				
	3회납	2개월	4개월			
	4회납	1개월	3개월	4개월		
	5회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6회납	1개월	1개월	2개월	2개월	3개월

(주) 비연속 2회납의 납입유예기간 1개월은 2회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을 말합니다.

제 2 편 운전가능자 제한

제 1 장 운전자 연령제한

1) 운전자연령 만 21/22/24/26/28/30/35/43/48 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21/22/24/26/28/30/35/43/48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1/22/24/26/28/30/35/43/48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대인배상Ⅱ」,「대물배상」 또는「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자기신체사고」 또는「자동차상해 특별약관」,「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자기차량손해」 또는「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대인배상Ⅱ」,「대물배상」 또는「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자기신체사고」 또는「자동차상해 특별약관」,「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자기차량손해」 또는「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대인배상Ⅱ」,「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21/22/24/26/28/30/35/43/48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1/22/24/26/28/30/35/43/48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운전자연령 만 33 세이상 만 55 세이하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33세이상 만55세이하의 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33세미만의 자 또는 만56세이상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개시일에 만55세인 자가 보험기간 중 만56세가 되어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33세미만의 자 또는 만56세이상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33세미만 또는 만56세이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 운전자연령 만 48 세이상 만 65 세이하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48세이상 만65세이하의 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48세미만의 자 또는 만66세이상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개시일에 만65세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만66세가 되어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

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48세미만의 자 또는 만66세이상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48세미만 또는 만66세이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 2 장 운전자 범위제한

1)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 (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단, 부모, 양부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단, 부모, 양부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단,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제외)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단, 자녀, 계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 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 기명피보험자 1 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 (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1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 I」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가족과 기명운전자 1 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 (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가족**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운전자** 1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 I」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단, 부모, 양부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단, 부모, 양부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단,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제외)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단, 자녀, 계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운전자**라 함은 계약 체결시 보험회사로 고지된 1인의 운전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및 그 가족,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 운전자 1인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 가족과 형제 · 자매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가족**과 **형제·자매**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단, 부모, 양부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단, 부모, 양부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단,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제외)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단, 자녀, 계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형제·자매**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부모(부모 중 1인이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가 동일한 기명피보험자의 형제·자매 및 그 부모의 양자, 양녀, 계자녀로 인한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및 그 가족과 형제·자매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대인배상Ⅱ」,「대물배상」또는「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자기신체사고」또는「자동차상해 특별약관」,「자기차량손해」또는「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대인배상Ⅱ」,「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 기명피보험자 1 인과 기명운전자 1 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운전자** 1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운전자**라 함은 계약 체결시 보험회사로 고지된 1인의 운전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운전자 1인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대인배상Ⅱ」,「대물배상」또는「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자기신체사고」또는「자동차상해 특별약관」,「자기차량손해」또는「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대인배상Ⅱ」,「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 부부운전자와 기명운전자 1 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배우자**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운전자** 1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운전자**라 함은 계약 체결시 보험회사로 고지된 1인의 운전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운전자 1인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대인배상Ⅱ」,「대물배상」또는「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

관」,「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8)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함)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장 소속의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임직원**이라 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개인사업자인 기명피보험자

② 개인 사업자인 기명피보험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③ 개인사업자인 기명피보험자와 직접적인 업무위탁 계약관계에 있는 자(공동사업자 대표 포함)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④ 개인사업자인 기명피보험자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임직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임직원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기명피보험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운전자가 임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위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9) 부부와 자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배우자** 및 **자녀**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 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①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단,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제외)

②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및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단, 자녀, 계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0) 기명피보험자 1 인과 자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자녀**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①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단,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제외)
②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및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단, 자녀, 계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자녀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1) 자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의 **자녀**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

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①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단,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제외)
②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및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단, 자녀, 계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자녀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대인배상Ⅱ」,「대물배상」또는「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자기신체사고」또는「자동차상해 특별약관」,「자기차량손해」또는「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대인배상Ⅱ」,「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 3 편 운전가능자 확대

1)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탑승 중인 피보험자동차를 **대리운전자**가 운전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해당 대리운전자를 피보험자로 보아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대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대리운전자**라 함은 피보험자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운전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리운전업체(사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운전대행을 의뢰한 경우, 소속업체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상 명시된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음의 사람은 제외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피용자
2. 피보험자동차를 임시적으로 운전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운전하는 자

② 위 제1항의 사고 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대리운전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일지라도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상할 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대리운전업자 또는 대리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보험계약(대리운전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발생한 손해가 위 다른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가 요청한 목적에 반하여 통상적인 경로를 현저히 벗어나서 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2. 대리운전자의 신체에 생긴 손해
3. 탑승자나 제3자의 교대운전 또는 임의대리운전으로 인한 손해
4. 대리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 중에 발생한 손해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단기 운전자확대 특별약관 II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단기 운전자확대 특별약관II」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제2편 운전가능자 제한 특별약관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보상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선택한 기간에는 해당운전자를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3조(책임기간)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회사의 책임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되어 마지막날 24시에 끝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 단기 운전자확대 특별약관(만 21 세이상 가족형)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단기 운전자확대 특별약관(만21세이상 가족형)』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만21세이상 가족**인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해당운전자를 제2편 운전가능자 제한 특별약관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21세이상**이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1세이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가족**이라 함은
①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단, 부모, 양부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
②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단, 부모, 양부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단,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제외)
⑤ 며느리 및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단, 자녀, 계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를 말합니다.

제3조(책임기간)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회사의 책임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되어 마지막날 24시에 끝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 4 편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되며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에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간주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의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 보험금	=	실제 손해액	+	비용	-	공제액

1. 실제손해액이라 함은 보통약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2.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나. 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 **배상의무자** 또는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배상의무자**라 함은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I」과 「대인배상II」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I」 및 「대인배상II」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④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제13조(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보험금의 청구시 제출서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3.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서
4.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5.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II」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6.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II」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때 그 금액
7.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간병비 지원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또는『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간병비 지원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매 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간병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상해등급	간병지원금	상해등급	간병지원금
1급	200만원	8급	32만원
2급	176만원	9급	28만원
3급	152만원	10급	24만원
4급	128만원	11급	20만원
5급	56만원	12급	16만원
6급	48만원	13급	6만원
7급	40만원	14급	6만원

주) 상해등급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제13조(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 대중교통상해 특별약관 II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또는『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대중교통상해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안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보험금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대중교통수단**에 탑승중인 경우
   운행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 탑승중인 대중교통 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비탑승중인 경우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대중교통 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또는 대중교통 수단간 충돌, 접촉, 화재, 폭발로 인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② 제1항의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반의 대중이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음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당 1억원을 지급합니다.

2. 후유장애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보통약관 '[별표 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2) 후유장애 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 1억원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3.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동거중인 부모
4.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동거중인 자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 보험금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다만, 보험금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고의를 저지른 보험금 수익자의 해당 보험금)
2.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
3. 경기(연습 포함), 흥행(연습 포함), 훈련 또는 시운전을 위하여 운행중인 대중교통수단을 조종하거나 탑승 중 발생한 손해
4. 대중교통수단의 설치, 수리, 점검, 정비, 청소작업 등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손해
5. 대중교통수단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던 중 발생한 손해
6. 대중교통수단을 운반하던 중 발생한 손해

7.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자로서 업무상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던 중 발생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 상급병실료 차액보상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또는『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상급병실료 차액보상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 상급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을 입원기간 30일 범위 내에서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 및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규정에 따라 병실료 차액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병실**이라 함은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을 말합니다. 다만, 특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인실 비용을 기준으로 병실료 차액을 인정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제13조(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 성형 및 치아보철 지원금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자기신체사고」또는「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성형 및 치아보철 지원금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성형지원금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 부분에 성형수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매 사고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00만원을 한도로 1㎝당 10만원의 성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안면부, 상지, 하지**란 다음을 말합니다.
①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며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②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을 말합니다.
③ 하지란 고관절 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외합니다.

2. 치아보철지원금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치아보철을 요하는 경우 매 사고에 대하여 1대당 20만원 치아보철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제13조(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 주말 사망 및 후유장애 확대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주말 사망 및 후유장애 확대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주말 및 휴일**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을 2배로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주말**은 금요일 18:00~월요일 06:00시를 말하며 **휴일**은
① 법정공휴일(국가에서 정한 임시·대체공휴일 포함)의 전일 18:00 ~ 익일 06:00시
② 노동절의 전일 18:00 ~ 익일 06:00시를 말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제13조(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 자녀케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또는『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일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라. 다른 자동차와 충돌, 접촉
2.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탑승 중 발생한 사고
3.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와 접촉한 사고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1.『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단, 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 이동장

치는 제외
2.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②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보험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매 사고에 대하여 1인당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사고 상해 위로금

피보험자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1> 및 <별표2>에서 정한 등급별 상해 또는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통사고 상해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단, 상해의 결과로 후유장애를 입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후유장애와 상해 위로금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후유장애 /상해등급	후유장애	상해	후유장애 /상해등급	후유장애	상해
1급	1억원	2,000만원	8급	3,000만원	80만원
2급	9,000만원	1,000만원	9급	2,400만원	60만원
3급	8,000만원	800만원	10급	1,800만원	40만원
4급	7,000만원	600만원	11급	1,400만원	20만원
5급	6,000만원	400만원	12급	1,000만원	10만원
6급	5,000만원	200만원	13급	600만원	10만원
7급	4,000만원	100만원	14급	400만원	10만원

2. 골절사고 지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진단을 받은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1>에서 분류하는 상해등급별 골절진단명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매 사고에 대하여 1인당 골절사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골절사고 중 치아파절은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골절사고	상해등급	지급금액
중상해 골절	1~4급	1인당 300만원
일반상해 골절	5~11급	1인당 100만원

3. 교육보충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한 상해등급 10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매 사고에 대하여 1인당 다음과 같이 교육보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상해등급	1~3급	4~5급	6~7급	8~10급
지급보험금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50만원

4. 스쿨존사고 위로금
   피보험자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로 위 '1.교통사고 상해 위로금'이 지급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의 50%를 추가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스쿨존**이라 함은『도로교통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말하며, 해당 사고의 관할 경찰서에서 이를 증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만 18세 이하 자녀**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 18세 이하 자녀**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보험가입시점에서의 만 18세 이하의 자녀로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3.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8) LADY 케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또는『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LADY케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후유장애, 상해를 입은 때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건강회복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매 사고에 대하여 1인당 상해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강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상해등급	건강회복지원금
1급	200만원
2급	200만원
3급	200만원
4급	100만원
5급	100만원
6급	50만원
7급	50만원

2. 물리치료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의 **골절**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매 사고에 대하여 1인당 50만원을 물리치료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골절**이라 함은 외력의 작용이 강하여 뼈가 부분적 또는 완전히 이단된 상태를 말합니다.

3. 휘트니스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의 상해를 입어, 최초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국내의료기관에 30일 초과 입원 시 매 사고에 대하여 1인당 50만원을 휘트니스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4. 상급병실료 차액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 상급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을 입원기간 30일 범위 내에서 50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 및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규정에 따라 병실료 차액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병실**이라 함은 기준병실보다 입원비가 비싼 병실을 말합니다. 다만, 특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인실 비용을 기준으로 병실료 차액을 인정합니다.

5. 성형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 부분에 성형수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매 사고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00만원을 한도로 1cm당 10만원의 성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안면부, 상지, 하지**란 다음을 말합니다.
①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며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②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을 말합니다.
③ 하지란 고관절 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외합니다.

6. 치아보철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치아보철을 요하는 경우 매 사고에 대하여 1개당 20만원 치아보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7. 사망위로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매 사고에 대하여 1인당 1억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합니다.

8. 후유장애 위로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2>에서 정한 장애등급 1~3급 장애를 입은 경우 매 사고에 대하여 1인당 1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9. 제7호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제8호 후유장애위로금으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제13조(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여성**인 경우를 말합니다. 단, 제2조(보상내용) 제1항 제7호 사망위로금의 경우에는 **만15세미만의 자**를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여성**이라 함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여성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만15세미만의 자**라 함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1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9) LADY 교통상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또는『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LADY 교통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행 중** 상태에서 **다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다른 자동차**에 탑승 중 사고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행 중**이란 교통승용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기차, 전동차, 모노레일 등 궤도에 따라 운행되는 차량을 말함)를 운전하거나 탑승하던 중 (자동차 및 그 부속장치 등에 매달려 있는 상태 등을 포함)이 아닌 상태를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1.『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로서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거중인 자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④ 단,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게 상해를 입힌 **다른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는 경찰서에서 발급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된 건에 한해 다른 자동차로 봅니다.

②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보험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매 사고에 대하여 1인당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회복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매 사고에 대하여 1인당 상해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강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상해등급	건강회복지원금
1급	200만원
2급	200만원
3급	200만원
4급	100만원
5급	100만원
6급	50만원
7급	50만원

2. 물리치료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의 **골절**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매 사고에 대하여 1인당 50만원을 물리치료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골절**이라 함은 외력의 작용이 강하여 뼈가 부분적 또는 완전히 이단된 상태를 말합니다.

3. 휘트니스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의 상해를 입어, 최초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국내의료기관에 30일 초과 입원 시 매 사고에 대하여 1인당 50만원을 휘트니스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4. 상급병실료 차액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 상급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을 입원기간 30일 범위 내에서 50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 및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규정에 따라 병실료 차액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병실**이라 함은 기준병실보다 입원비가 비싼 병실을 말합니다. 다만, 특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인실 비용을 기준으로 병실료 차액을 인정합니다.

5. 성형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 부분에 성형수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매 사고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00만원을 한도로 1cm당 10만원의 성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안면부, 상지, 하지**란 다음을 말합니다.
①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며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②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을 말합니다.
③ 하지란 고관절 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외합니다.

6. 치아보철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치아보철을 요하는 경우 매 사고에 대하여 1개당 20만원 치아보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7. 사망위로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매 사고에 대하여 1인당 1억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합니다.

8. 후유장애 위로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2>에서 정한 장애등급 1~3급 장애를 입은 경우 매 사고에 대하여 1인당 1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9. 제7호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제8호 후유장애위로금으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여성**인 경우를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② 제1항의 동거 중인 부모 및 자녀
단, 배우자, 부모, 자녀의 정의는 보통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제15호를 따릅니다.
③ 단, 제2조(보상내용) 제2항 제7호 사망위로금의 경우에는 **만15세미만의 자**를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여성**이라 함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여성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만15세미만의 자**라 함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1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③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④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⑤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1.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
⑦ 위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상해를 입힌 다른 자동차를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운전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배상의무자**라 함은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 5 편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1)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에서 정한 기준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경미한 손상**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품질인증부품**이라 함은「자동차관리법」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고는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제21조(보상하는 손해) ②항에서 규정한 사고를 제외한 다음의 사고에 한합니다.
1.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물체**라 함은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 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침수**라 함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Door)나 선루프(Sun roof)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내용에 따릅니다.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보험금의 계산은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내용에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자기차량손해 초과수리비 보상 특별약관 II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자기차량손해 초과수리비 보상 특별약관II」을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실제로 수리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21조(보상하는 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당시 보험가액의 150%를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입당시의 차량가액보다 적은 경우 및 도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이 체결되고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 (다른 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다른 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다른 자동차의 일부로 보지 않습니다)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1. 타차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①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 [승용자동차(다인승1종·2종 승용자동차를 포함합니다), 경·3종승합 자동차 및 초소형·경·4종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2.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회사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② 사업용자동차 중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대여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대여사업자로부터 8일 이상 대여받은 자동차가 아닌 것
2.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3. 대여시 소요되는 대차비용을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경우의 자동차가 아닌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또 다른 보험계약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다른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④ 다른자동차의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경미한 손상**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품질인증부품**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②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

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다른 자동차가 <용어풀이>의 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다른 자동차가 <용어풀이>의 ②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보상한도)

①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다른 자동차의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은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보상합니다.

제6조(손해액의 결정)

①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기명피보험자가 가입한 차량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합니다.

② 다른 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 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③ 다른 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④ 다른 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조(피해물에 대한 보험회사의 권리)

① 보험회사가 다른 자동차의 전부손해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보험회사에 이전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제8조(현물보상)

보험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

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차량신가보상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신차**로서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차량 신가보상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신차**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① 국산 차량 : 최초차량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차량
② 외제 차량 : 최초차량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면서, 최초출고년도와 보험기간 시작년도가 같은 차량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한 번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전부손해이거나, 그 수리비용이 보험가입금액의 70%이상이고 피보험자가 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전부손해로 보아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지급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과 다른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

② 위 제1항의 사고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입당시의 보험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입당시의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
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5년이내의 **전기자동차**로서 보통약관의「자기차량손해」및『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전기자동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전기자동차라** 함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로서「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또는『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규정한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의 **구동용 배터리**가 파손되어 수리 또는 부분교체를 통한 활용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구동용 배터리 전부를 새 배터리로 교체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새 배터리를 포함한 수리비용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지급 보험금	=	새 배터리의 가액	-	감가상각 적용 후 새 배터리의 가액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구동용 배터리**라 함은 전기자동차에 장착되어 구동 모터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배터리를 말합니다. (전기자동차에 장착된 보조배터리 제외)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 전기자동차 충전 중 사고 보상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자동차**로서 보통약관의「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별약관」,『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전기자동차 충전 중 사고 보상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전기자동차라** 함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로서「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정격의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이용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충전하던 중** 발생한 사

고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화재 또는 폭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를 입은 때
2.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충전 중 감전 사고로 죽거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때

②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해당 특약의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의 **중요한 부분**의 전기적 손해에 한하여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라 함은 해당 전기자동차의 정격의 휴대용 충전기(또는 가정용 충전기기 및 장치), 거주지 혹은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전용 완속충전기 및 급속충전기를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충전하던 중**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충전을 위하여 충전설비를 조작한 시점부터 충전 완료까지의 과정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치료를 요하는 상해**라 함은 감전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화상 및 신체조직의 괴사, 심혈관계, 신경계, 근골격계 등의 상해로서, 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④ 이 특별약관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함은 전기차의 모터, 감속기, 구동용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품을 말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대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 교통비지원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교통비지원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교통비

를 지급합니다. 다만, 다른 차량의 일방과실로 인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교통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당 보험금에 교통비용의 인정 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첨부] 교통비용의 인정 기간

구분	인정 기간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체에 입고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실제로 소요된 **통상의 수리기간**으로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단, 외국산 자동차로서 부품조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연장되는 기간은 제외)
수리 불가능한 경우	10일
도난당한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하며, 30일 이내에 도난 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 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를 말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8) 전손시 신규등록 및 검수비용 지원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전손시 신규등록 및 검수비용 지원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한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 (보통약관 제24조 '전부손해' 규정을 따름)일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른 차량의 일방과실로 인한 피

보험자동차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를 한도로 피보험자 명의의 차량을 신규 등록할 때 실제로 소요된 취·등록세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회사는 위 '1'의 취·등록세가 지급되는 경우 신규 등록차량 검수비용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비용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표준계산서) 등을 제출받아 보험회사가 그 지출목적, 금액,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도난으로 인한 손해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9) 차량운반비용 지원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차량운반비용 지원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가 주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의 비용을 사고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수리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의 주소지 근처의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장소 또는 사고발생지 근처의 정비공장 등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된 비용
2. 수리를 종료한 후 피보험자의 요청으로 기명피보험자의 주소지 또는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장소까지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송사업자(자가용제외)가 피보험자동차를 견인하여 운반하는데 소요된 비용

② 보험회사가 보상할 제1항의 비용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를 지급합니다.

③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보통약관(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의 대차료 등)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④ 제1항의 비용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표준

계산서) 등을 제출받아 보험회사가 그 지출목적, 금액,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0) 외제차운반비용 지원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외제차**이고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외제차운반비용 지원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외제차**'란 외국 자동차 제조회사에 의해 대한민국이 아닌 곳에서 제조되어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의한 자동차를 말하며, 다음의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① 외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외국 자동차 제조회사(해당 회사의 대한민국 내 자회사, 법인 포함)가 대한민국 내에서 제조(또는 조립) 완료한 자동차
② 국내에 본점 소재지를 둔 국내 자동차 제조회사(해당 회사의 외국소재 자회사, 법인 포함)가 대한민국이 아닌 곳에서 제조(또는 조립) 완료한 자동차
③ 위 '①'의 외국 자동차 제조회사와 '②'의 국내 자동차 제조회사가 기술제휴(공동설계, 공동판매)하여 제조(또는 조립)한 자동차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가 주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의 비용을 사고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수리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의 주소지 근처의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장소 또는 사고발생지 근처의 정비공장 등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된 비용
2. 수리를 종료한 후 피보험자의 요청으로 기명피보험자의 주소지 또는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장소까지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송사업자(자가용제외)가 피보험자동차를 견인하여 운반하는데 소요된 비용

② 보험회사가 보상할 제1항의 비용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를 지급

합니다.

③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보통약관(대물배상 보험금지급기준 등)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④ 제①항의 비용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영수증(표준계산서) 등을 제출받아 보험회사가 그 지출목적, 금액,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1)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는 보통약관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서 아래 각 호에 따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실제 수리 시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 또는 배상책임(대물배상) 대상 자동차가 출고 후 5년을 초과한 경우로서, **외장부품**을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이나 피보험자가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를 희망하는 경우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품질인증부품**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OEM부품**이라 함은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말하며, OEM부품 공시가격은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자동차제작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외장부품**이라 함은 자동차의 외판을 구성하는 부품으로서 범퍼, 보닛(후드), 펜더, 트렁크리드, 도어 및 백도어를 의미합니다.

제3조(OEM부품 사용에 대한 특례)
회사는 보통약관「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또는「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OEM부품으로 교환수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 및「자기차량손해」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도 불구하고 OEM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경미한 손상**에 해당하여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 경우
2. 자동차에 이미 장착되어 있던 **OEM부품 또는 품질인증부품 이외의 부품**이 파손되어 교환수리하는 경우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경미한 손상**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OEM부품 또는 품질인증부품 이외의 부품**이라 함은「자동차관리법」제5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중고부품, 재생부품 등을 의미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상책임(대물배상)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대물배상」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자기차량손해」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 범위 또는 운전 가능 연령 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이 보통약관「대물배상」인 경우 사고 당시 해당 차량의 중고시세,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또는「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인 경우 보험가입금액(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환입)
①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또는「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였으나, 품질인증부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OEM부품으로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제7조(적용 제외)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OEM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하며,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 따른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품질인증부품을 공급할 수 없거나 공급 지연 등의 사유로 회사가 OEM부품으로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이 OEM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② 이 특별약관 제3조(OEM부품 사용에 대한 특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 따른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2) 차량기준가액 확대보상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피보험자동차의 최초등록일(*1)이 1분기이면서 개시시점(*2)이 1분기인 경우는 제외)

1.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
2.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을 개시시점의 보험가액과 동일하게 가입한 경우
3. 보험개발원이 정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상 기준가액이 있는 경우 (신차(*3)로써 차량기준가액표상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② 단, 위 제①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신차(*3)는 이 특별약관을 자동 적용합니다.

《용어풀이》

① **최초등록일**이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일을 말하며, 단 동법 13조에 의해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한 경우에는 말소등록 이전에 최초로 한 신규 등록일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개시시점**이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또는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교체한 경우 그 교체일을 말합니다.

③ **신차**란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피보험자동차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보통약관 제21조(보상하는 손해) 또는「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② 보통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제18호 및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1.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가액은 최초등록일의 당해연도 차량기준가액표상 최초로 존재하는 분기의 가액에 최초등록일부터 개시시점까지 경과된 기간을 적용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신차로써 차량기준가액표상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신차가액을 적용합니다.)
2. 보험계약 책임개시 이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액은 최초등록일의 당해연도 차량기준가액표상 최초로 존재하는 분기의 가액에 최초등록일부터 사고발생시점까지 경과된 기간을 적용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신차로써 차량기준가액표상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신차가액을 적용합니다.)

③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보험개발원이 정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상 "Ⅲ. 부록 3. 표준감가상각잔존율표"에 따라 적용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3) 실시간 렌터카 차량손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이 체결되고 「실시간 렌터카 차량손해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은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 (다른 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다른 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다른 자동차의 일부로 보지 않습니다)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1. 타차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사업용자동차 중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대여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대여사업자로부터 8일 이상 대여받은 자동차가 아닌 것
②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③ 대여시 소요되는 대차비용을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경우의 자동차가 아닌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또 다른 보험계약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다른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④ 다른자동차의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경미한 손상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품질인증부품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

니다.

제3조(피보험자)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②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보상한도)
①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다른 자동차의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은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보상합니다.

제6조(손해액의 결정)
①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기명피보험자가 가입한 차량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합니다.
② 다른 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 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③ 다른 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④ 다른 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조(피해물에 대한 보험회사의 권리)
① 보험회사가 다른 자동차의 전부손해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

자의 권리는 보험회사에 이전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제8조(현물보상)
보험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책임기간)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회사의 책임기간은 보험료를 받은 시점부터 마지막 날의 **동일 시점**까지입니다. 단, 렌터카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대여시점으로부터 이 특별약관의 가입 시점이 1시간 초과시 익일 0시부터 책임기간이 개시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동일 시점이라 함은 보험료를 받은 시각과 동일한 시각을 말합니다.

제10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 시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불명확한 사진을 제출한 경우 보통약관 제44조(보험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보아 보통약관 제53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 형사합의금 지원 특별약관 II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II」를 가입하고 「형사합의금 지원 특별약관II」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거나,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를 입혀 발생된 손해에 대해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② 단, "기명피보험자 제외" 조건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제1항의 피보험자 중 기명피보험자를 피보험자에서 제외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대인배상II」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① 이 특별약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보험자가 형사합의를 한 경우, [첨부] 형사합의금 지급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상합니다. 다만,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실제 공탁금액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지급하고, 향후 피보험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가 타인을 사망케 한 사고
2. 피보험자가 [별표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다만 이 단서 중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은 제외합니다)를 일으켜 타인을 다치게 한 사고
3.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를 입힌 사고

[첨부] 형사합의금 지급기준

구분			일반형	고급형	VIP형	VVIP형
1인당 지급한도	사망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2억원
	상해 등급	1~3급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5억원
		4~5급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8,000만원
		6~7급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8~14급	-	-	100만원	10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② 제1항의 타인 사망에 따른 형사합의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상으로 지급한 형사합의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text{형사합의금}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특별약관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④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타인**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을 배상책임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타인**이라 함은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부모**라 함은 부모와 양부모를 말하며,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시 제출서류)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등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나 증거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2.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생한 공소장
3.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 명시)
4. 보험금 청구서

5. 법원에 공탁한 경우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한 공탁(확인)서 및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
6.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② 이 특별약관 제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3.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피보험자동차 운전자이외의 자의 보험금 청구)

①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사망, 구속, 형집행 등으로 보험금의 청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 운전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변호사선임비용 지원(경찰조사 포함)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Ⅱ」를 가입하고, 「변호사선임비용 지원(경찰조사 포함)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② 단, "기명피보험자 제외" 조건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제1항의 피보험자 중 기명피보험자를 피보험자에서 제외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①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금
다음의 사고에 대하여 [첨부] 변호사선임비용 지급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다만,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2.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동법 제453조에 의거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첨부]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기준

구 분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보상한도
일반형	500만원 기준	500만원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약식기소**라 함은 「형사소송법」 제449조 규정에 의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말합니다.

② 경찰조사시 변호사 동행비용 지원금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를 입힌 경우의 사고로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약식 기소 또는 불기소 된 경우 1사고당 300만원을 한도로 실제 변호사 동행 비용을 보상합니다. 단, 변호사 동행 비용 지원금은 제1항의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변호사선임비용 지원(경찰조사 포함) 특별약관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조합 등에서 공제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장책임액의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장대상 변호사선임비용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text{각 계약의 보장대상 변호사선임비용 중 최고액} - \text{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최소액}) \times \frac{\text{각 계약별 보장책임액}}{\text{각 계약별 보장책임액을 합한 금액}}$$

주) 1. 보장대상 변호사선임비용 : 보험금 지급사유에 따라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실제로 부담한 금액 (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
2. 보장책임액 : (보장대상 변호사선임비용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보상한도 중 작은 금액

<예시>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의 분담

피보험자의 실제 변호사 선임비용(보장대상 변호사 선임비용) **600만원**

계약1 : 보상한도 500만원, 공제금액 없음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0
보장책임액 = min(600-0, 500) = **500만원**

계약2 : 보상한도 300만원, 공제금액 실제 변호사비용의 50%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300만원 (실제 변호사선임비용의 50%)
보장책임액 = min(600-300 , 300) = **300만원**

$$\text{계약1} = 375 = (600 - 0) \times \frac{\text{계약1(500)}}{\text{계약1(500)} + \text{계약2(300)}}$$

$$\text{계약2} = 225 = (600 - 0) \times \frac{\text{계약2(300)}}{\text{계약1(500)} + \text{계약2(300)}}$$

④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3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시 제출서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등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나 증거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보험금 청구서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소장, 판결문,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
4.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제7조(피보험자동차 운전자 이외의 자의 보험금 청구)

①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사망, 구속, 형집행 등으로 보험금의 청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 운전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 벌금비용 지원(스쿨존 및 대물 확대형)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Ⅱ」를 가입하고 「벌금비용 지원(스쿨존 및 대물 확대형)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함으로써 생긴 손해 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51조**
>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피보험자)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② 단, "기명피보험자 제외" 조건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제1항의 피보험자 중 기명피보험자를 피보험자에서 제외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① 대인 벌금비용 지원금
1. 이 특별약관은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사고마다 2천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2. 위 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사고마다 3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② 대물 벌금비용 지원금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을 1사고당 5백만원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

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대인벌금 비용 • 대물벌금 비용	=	손해액	×	이 특별약관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타인**이라 함은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부모**라 함은 부모와 양부모를 말하며,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시 제출서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등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나 증거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보험금 청구서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4. 법원의 판결문 사본
5.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제7조(피보험자동차 운전자 이외의 자의 보험금 청구)

①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사망, 구속, 형집행 등으로 보험금의 청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 운전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 7 편 긴급출동 서비스

1) 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해당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긴급견인	가.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현장조치 또는 30㎞ 범위 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30㎞를 초과하여 긴급견인을 하는 경우 30㎞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가 전장 5.5m 또는 중량 3톤 이상인 경우이거나,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비상급유	가. 피보험자동차가 연료의 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운행용으로 1일당 1회, 보험기간 중 총2회에 한하여 3ℓ를 한도로 연료를 주유하여 드립니다. 다만, 3ℓ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량에 대하여 실비를 받고 주유하여 드립니다. 또한, 2회 사용 이후 비상급유 서비스를 추가로 사용할 시에는 제공되는 연료 비용은 피보험자 부담으로 합니다. 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 연료의 소진으로 운행이 정지된 경우는 긴급견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해 드립니다. 이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견인거리 한도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 부담으로 합니다.
배터리충전	피보험자동차가 배터리(차량 Key 배터리, 연료전지 등은 해당되지 않음)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 시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리며, 배터리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타이어 펑크수리 및 교체	가. 피보험자동차가 타이어의 지면에 닿은 타이어트레드 부분(접지면)에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구멍이 뚫린 단순펑크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타이어 펑크를 수리하여 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타이어펑크 1개당 서비스 1회를 차감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야간,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경우 등 펑크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2) Run-flat형 타이어, 튜브형 타이어 등의 펑크와 같이 펑크 수리 시 특수장비가 필요한 경우 (3) 타이어의 측면에 구멍이 뚫린 경우 (4) 자연 마모로 인한 펑크 또는 타이어가 찢어진 경우 (5) 기타 현장에서 타이어펑크 수리가 곤란한 경우 나. 위 '가'목에 의해 타이어펑크 수리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가 중량 3톤 이상인 경우이거나 차량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잠금장치해제	가. 피보험자동차의 열쇠를 분실하였거나 피보험자동차 실내에 열쇠를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람이 피보험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 나. 외제 차량 및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 중 특수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 등)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해제가 불가능한 차량의 경우 이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별도의 전문업체에 잠금장치 해제를 의뢰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때 전문업체 잠금장치해제 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험회사는 통상적인 방법의 잠금장치 해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잠금장치 해제서비스 전문업체의 서비스 제공 지연 또는 미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 잠금장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파손된 부분의 원상회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브레이크액 / 엔진오일 / 파워오일 보충	가. 피보험자동차가 브레이크액, 엔진오일, 파워오일의 부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부족분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다만, 브레이크액은 1ℓ이내, 엔진오일은 2ℓ이내, 파워오일은 1ℓ이내로 하고, 기준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량에 대하여 실비를 받고 보충하여 드립니다. 나. 긴급출동 시 보유한 제품과 규격이 상이한 경우, 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라디에이터캡 교환	피보험자동차의 주행 중 라디에이터캡의 파손 및 불량으로 엔진 과열시 라디에이터캡을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특수 캡의 경우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브레이크등 / 전조등 교환	피보험자동차가 브레이크등, 전조등의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하는 전구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특수등의 경우에는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윈도우브러쉬 고무교환	우천시 또는 눈이 오는 때에 윈도우브러쉬 불량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앞쪽 운전석 윈도우브러쉬 고무부분을 새부품으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윈도우브러쉬 고무부분만 교환할 수 없는 경우 실비를 받고 원도우브러쉬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휴즈 교환	가. 피보험자동차가 휴즈단락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휴즈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엔진룸의 휴즈는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나. 다만, 긴급출동 시 보유한 제품과 규격이 상이한 경우, 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현장응급조치	피보험자동차의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가능한 차량 고장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를 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품의 정비 또는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부동액보충	가. 피보험자동차가 부동액 부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부족분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나. 다만, 긴급출동 시 보유한 제품과 규격이 상이한 경우, 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벨트 교환	피보험자동차가 도로상 주행 중 각종 벨트(팬벨트, 파워벨트)류의 절단 및 파손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벨트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현장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DOHC차량, 2000cc이상차량 및 외제 차량은 긴급견인 서비스로 대체하여 제공합니다.
긴급구난	피보험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자력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 구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구난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실비를 받고 구난하여 드립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가 전장 5.5m 또는 중량 3톤 이상인 경우이거나,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무료점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을 목적으로 무료점검(엔진, 하체, 전기부분을 말합니다)을 받고자 할 때에는 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지정 정비업체에 1~2일전에 예약 방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대행 및 폐차대행	피보험자동차의 정기검사대행서비스, 폐차대행서비스를 실비를 받고 대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2.5톤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2.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한 경우
3. 구난작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 연결 직전까지 소요된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
4. 외제 차량 및 2500cc 이상의 국산 차량을 구난한 경우
5. 기타 별도의 구난장비(세이프티 로더 등)를 사용하여 구난하는 경우
6. 특수지역(산간, 해안, 갯벌 등)으로 일반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이 불가능하여 특수장비(포크레인, 크레인, 트랙터, 사륜구동자동차 등)를 사용하는 경우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에서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긴급출동 서비스의 요청지가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2. 도서 또는 산간지방인 경우
3. **기타 보험회사에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호, 제2호, 제3호의 사유로 인해 긴급출동 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
5.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하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손해 (적재물의 손상, 멸실 등)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 보험회사에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폭설, 폭우, 해일,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출동이 불가능한 경우
2.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경우
3. 활어차, 적재정량이 초과된 화물차 등 이와 유사한 차량의 적재물의 중량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제1호, 제2호, 제3호 이외에 통상적으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서비스의 한도)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횟수는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 총 6회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3회로 한정하여 제공합니다.
② 제1항에서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는 횟수를 각각 산정합니다.
③ 제1항에서 이 특별약관 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서 검사대행 및 폐차대행 서비스는 횟수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해지)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종료됨과 동시에 특별약관도 자동해지 됩니다.
1. 보험약관「대인배상Ⅰ」이 종료된 때
2.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정해진 횟수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 때

제8조(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회사가 제공할 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별약관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1) 긴급 견인서비스 확대 추가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2. 이 추가특별약관은「긴급 견인서비스 확대 추가 특별약관(대형견인)」을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의 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의 긴급견인 서비스를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구분	내용
고급형 (60km한도)	가.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현장조치 또는 60km 범위 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60Km를 초과하여 긴급견인을 하는 경우 6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가 전장 5.5m 또는 중량 3톤 이상인 경우이거나,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1-2) 긴급 견인서비스 확대 추가 특별약관 (대형견인)

제1조(적용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2. 피보험자동차가 전장 5.5m 또는 중량 3톤 이상인 경우이거나,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긴급 견인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이 추가특별약관은 「긴급 견인서비스 확대 추가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의 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의 긴급견인 서비스를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구분	내용
긴급견인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현장조치 또는 10km 범위 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10km를 초과하여 긴급 견인을 하는 경우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3조(서비스의 한도)
① 피보험자가 이 추가특별약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횟수는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 총 2회까지로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추가특별약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횟수는 보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회로 한정하여 제공합니다.
③ 이 추가특별약관과 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에서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는 횟수를 각각 산정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2) 한화 긴급출동 플러스 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한화 긴급출동 플러스 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해당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제

공합니다.

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긴급견인	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현장조치 또는 30㎞ 범위 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30㎞를 초과하여 긴급견인을 하는 경우 30㎞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가 전장 5.5m 또는 중량 3톤 이상인 경우이거나,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비상급유	가. 피보험자동차가 연료의 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운행용으로 1일당 1회, 보험기간 중 총 2회에 한하여 5ℓ를 한도로 연료를 주유하여 드립니다. 다만, 5ℓ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량에 대하여 실비를 받고 주유하여 드립니다. 또한 2회 사용 이후 비상급유 서비스를 추가로 사용할 시에는 제공되는 연료 비용은 피보험자 부담으로 합니다. 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 연료의 소진으로 운행이 정지된 경우는 긴급견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해 드립니다. 이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견인거리 한도를 초과하는 거리에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 부담으로 합니다.
차량진단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진단을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 예약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30가지 주요항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차량진단 내역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다만, 차량진단서비스는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비이력관리	보험회사가 지정한 정비업체에서 정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리 내역, 소모품 교환주기, 차량사항 등을 기록한 정비이력통장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수리차량운반	고장으로 인해 피보험자동차를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서 수리할 경우, **작업시간이 1시간이상 소요**될 때에는 수리완료 후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여 드립니다. 수리 차량운반 서비스는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소모품 교환 등 단순 수리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만, 운반거리가 10㎞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000원의 초과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며, 운반거리는 60㎞를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30가지 주요항목**이라 함은 엔진오일, 미션오일, 파워오일, 브레이크액, 타이밍 벨트, 팬벨트, 배터리, 스타트모터, 알터네이터, 플러그배선, 점화플러그, 클러치, 클러치실린더, 배기파이프, 소음기, 부동액(냉각수), 라디에이터호스, 주차브레이크, 브레이크패드(라이닝), 에어컨 벨트, 타이어공기압, 타이어마모, 예비타이어, 에어컨(히타), 헤드램프(안개등), 브레이크등, 워셔액, 와이퍼 브레이드, 경음기, 실내등을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작업시간이 1시간이상 소요**란 정비작업장에서 수리가 시작된 후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시간으로, 차량진단 서비스에 소요되는 시간은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다음의 서비스는「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의 해당 서비스에 따릅니다.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수리 및 교체	잠금장치해제
브레이크액 / 엔진오일 / 파워오일 보충	라디에이터캡 교환	브레이크등 / 전조등 교환
윈도우브러쉬 고무교환	휴즈 교환	현장응급조치
부동액보충	벨트 교환	긴급구난
검사대행 및 폐차대행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에서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긴급출동 서비스의 요청지가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2. 도서 또는 산간지방인 경우
3. **기타 보험회사에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호, 제2호, 제3호의 사유로 인해 긴급출동 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
5.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하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손해 (적재물의 손상, 멸실 등)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 보험회사에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폭설, 폭우, 해일,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출동이 불가능한 경우
2.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경우
3. 활어차, 적재정량이 초과된 화물차 등 이와 유사한 차량의 적재물의 중량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제1호, 제2호, 제3호 이외에 통상적으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서비스의 한도)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횟수는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 총 10회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3회로 한정하여 제공합니다.
② 제1항에서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는 횟수를 각각 산정합니다.
③ 제1항에서 이 특별약관 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서 검사대행 및 폐차대행, 차량진단, 정비이력관리, 수리차량운반 서비스는 횟수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해지)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종료됨과 동시에 특별약관도 자동해지 됩니다.

1. 보험약관「대인배상Ⅰ」이 종료된 때
2.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정해진 횟수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 때

제8조(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회사가 제공할 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별약관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1) 긴급 견인서비스 확대 추가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한화 긴급출동 플러스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한화 긴급출동 플러스 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2. 이 추가특별약관은「긴급 견인서비스 확대 추가 특별약관(대형견인)」을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한화 긴급출동 플러스 특별약관의 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의 긴급견인 서비스를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구분	내용
고급형 (60km한도)	가.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현장조치 또는 60km 범위 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60Km를 초과하여 긴급견인을 하는 경우 6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가 전장 5.5m 또는 중량 3톤 이상인 경우이거나,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2-2) 긴급 견인서비스 확대 추가 특별약관 (대형견인)

제1조(적용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한화 긴급출동 플러스 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2. 피보험자동차가 전장 5.5m 또는 중량 3톤 이상인 경우이거나,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긴급 견인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이 추가특별약관은「긴급 견인서비스 확대 추가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한화 긴급출동 플러스 서비스 특별약관의 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의 긴급견인 서비스를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구분	내용
긴급견인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현장조치 또는 10km 범위 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10km를 초과하여 긴급 견인을 하는 경우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3조(서비스의 한도)
① 피보험자가 이 추가특별약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횟수는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 총 2회까지로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추가특별약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횟수는 보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회로 한정하여 제공합니다.
③ 이 추가특별약관과 한화 긴급출동 플러스 서비스 특별약관에서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는 횟수를 각각 산정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3) 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친환경자동차)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친환경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친환경자동차**라 함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제 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해당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긴급견인	가.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현장조치 또는 150㎞ 범위 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150㎞를 초과하여 긴급견인을 하는 경우 150㎞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가 전장 5.5m 또는 중량 3톤 이상인 경우이거나,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배터리 긴급충전 지원	피보험자동차 고전압배터리(리튬이온전지 등) 방전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계기판에 표시된 주행가능거리가 10㎞ 이내인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충전기가 설치된 장소까지 150㎞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150㎞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다음의 서비스는 「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 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의 해당 서비스에 따릅니다.

타이어 펑크수리 및 교체	잠금장치해제	브레이크액 보충
윈도우브러쉬 고무교환	휴즈 교환	현장응급조치
긴급구난	무료점검	검사대행 및 폐차대행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에서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긴급출동 서비스의 요청지가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2. 도서 또는 산간지방인 경우
3. **기타 보험회사에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호, 제2호, 제3호의 사유로 인해 긴급출동 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
5.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하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손해 (적재물의 손상, 멸실 등)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 보험회사에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폭설, 폭우, 해일,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출동이 불가능한 경우
2.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경우
3. 활어차, 적재정량이 초과된 화물차 등 이와 유사한 차량의 적재물의 중량으로 인하여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제1호, 제2호, 제3호 이외에 통상적으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서비스의 한도)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횟수는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 총 6회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3회로 한정하여 제공합니다.
② 제1항에서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는 횟수를 각각 산정합니다.
③ 제1항에서 이 특별약관 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서 검사대행 및 폐차대행 서비스는 횟수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해지)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종료됨과 동시에 특별약관도 자동해지 됩니다.
1. 보험약관「대인배상Ⅰ」이 종료된 때
2.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정해진 횟수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 때

제8조(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회사가 제공할 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별약관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친환경자동차)II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회사가 인정하는 자동차제조사**의 차량이면서 **친환경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회사가 인정하는 자동차제조사**라 함은 긴급출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사와 제휴한 업체에서 서비스 제공 가능한 자동차제조사를 말합니다. (대상 자동차제조사 : 현대자동차(제네시스 포함))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친환경자동차**라 함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해당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긴급견인	가.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현장조치 또는 150㎞ 범위 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150㎞를 초과하여 긴급견인을 하는 경우 150㎞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가 전장 5.5m 또는 중량 3톤 이상인 경우이거나,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동 배터리 충전	가. 피보험자동차의 구동배터리 방전으로 운행이 정지된 경우, 보험기간 중 총 2회, 1일 1회에 한하여 1회당 15kwh를 한도로 **구동배터리** 충전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구동 배터리**라 함은 전기자동차에 장착되어 구동모터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배터리를 말합니다. (전기자동차에 장착된 보조(시동) 배터리 제외) 나. 위 '가'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긴급출동 하였으나 현장 조치만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력 운행하기 어려워 긴급 견인을 할 경우에는 충전기가 설치된 장소까지 15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15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다음의 서비스는「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 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의 해당 서비스에 따릅니다.

타이어 펑크수리 및 교체	잠금장치해제	브레이크액 보충
윈도우브러쉬 고무교환	휴즈 교환	현장응급조치
긴급구난	무료점검	검사대행 및 폐차대행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에서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긴급출동 서비스의 요청지가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2. 도서 또는 산간지방인 경우
3. 기타 보험회사에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호, 제2호, 제3호의 사유로 인해 긴급출동 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
5.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하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손해 (적재물의 손상, 멸실 등)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 보험회사에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폭설, 폭우, 해일,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출동이 불가능한 경우
2.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경우
3. 활어차, 적재정량이 초과된 화물차 등 이와 유사한 차량의 적재물의 중량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제1호, 제2호, 제3호 이외에 통상적으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서비스의 한도)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횟수는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 총 6회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3회로 한정하여 제공합니다.

② 제1항에서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는 횟수를 각각 산정합니다.

③ 제1항에서 이 특별약관 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서 검사대행 및 폐차대행 서비스는 횟수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해지)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종료됨과 동시에 특별약관도 자동해지 됩니다.

1. 보험약관「대인배상Ⅰ」이 종료된 때
2.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정해진 횟수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 때

제8조(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회사가 제공할 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별약관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 8 편 녹색상품

1) 친환경부품사용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자기차량손해」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 제1호 다목을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합니다.
2. 제1호의 경우에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중고부품 또는 재제조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새 부분품 가격**의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중고부품 또는 재제조부품)을 사용한 경우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인정한 업체로부터 다음의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1) 중고부품 : 사이드 미러, 프론트 팬더, 본네트, 라디에이터 그릴, 프론트 도어, 리어 도어, 트렁크 판넬, 프론트 범퍼, 리어 범퍼, 백 도어, 리어 피니셔, 쿨러 콘덴서, 테일 램프, 헤드 램프, 안개등, 룸미러(하이패스 기능), 전후방 센서
(2) 재제조부품 :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해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부품

《용어풀이》
새 부분품 가격이란 AOS(Areccom Online System) 內 등록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AOS 內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제작사에서 권장하는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AOS란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수리비견적 시스템을 말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4항 제2호를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1.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호의 경우에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새 부분품가격의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다음을 말합니다.
1.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제1항 제2호의 경우 기명피보험자
2.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제2항 제2호의 경우 대물배상 대상차량의 소유자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대물배상」에 해당하는 사항,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보험개발원이 인정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피보험자동차 또는 대물배상 대상 차량을 수리한 경우 새 부분품 가격과의 차액
3.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한 경우 새 부분품 가격과의 차액

제5조(보험금의 환입)

① 보통약관「대물배상」또는 「자기차량손해」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대물배상」 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하였으나 친환경부품의 하자 등으로 이미 사용된 친환경부품을 새 부분품으로 다시 교체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한 금액을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제6조(적용배제)

보험개발원의 인정 업체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친환경부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후정산)

제1조(적용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유지 중인 자동차보험 계약에 이 특별약관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잔여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에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운행정보 확인장치'라 합니다)를 장착하고 보험기간동안 '운행정보 확인장치'에 기록된 운행정보를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식으로 송부하기로 약정한 경우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운행정보 확인장치**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포함한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다음의 장치를 말합니다.

① 피보험자동차 출고 시 차량제조사의 표준장치 또는 옵션으로 장착된 장치

② 상기 '①'이외에 피보험자가 별도로 구매하여 장착한 장치로서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의 기술인증을 부여받은 장치

2. 보험기간동안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를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식으로 송부하기로 약정한 경우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과의 보험기간 만료일을 일치시키기 위한 계약으로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위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행거리 정보를 위조, 변조한 경력이 있거나「ECO 마일리지 특별약관」,『퍼마일 특별약관(월정산형)』을 가입하고 보험료 정산 방법에 따라 산출된 정산보험료를 회사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

제2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의 책임개시일 이후 15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누적운행거리정보'의 촬영사진과 이를 확인한 날짜 또는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 전송하고 보험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타사와 맺은 직전 계약에서 마일리지 특별약관 정산에 사용된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의 정보를 송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 45일부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1년간 주행거리 확인을위하여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④ 위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타사와 맺은 직후 계약에서 마일리지 특별약관 가입에 사용된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종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날(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교체(대체) 이전 차량과 교체(대체) 이후 차량의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및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⑥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기간 첫날부터 해지시점까지 주행거리 확인을 위하여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제3조(운행정보 확인에 관한 일반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기간 중 사고 처리 및 긴급출동 서비스 제공시 피보험자동차의 총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운행정보 확인 시 다음에 해당될 때에는 1년간 주행거리가 1만5천㎞를 초과하여 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또는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 확인장치 또는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의 불량・오작동 및 조작・교체, 운행정보의 훼손 등에 따라 정확한 1년간 주행거리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표시장치 계기판 사진의 총 주행거리가 누락되어 1년간 주행거리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등)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책임개시일 이후 15일 이내에 이 특별약관 제2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주행거리정보를 송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하는 운행정보를 변경,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 가입한 후에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제3항의 가입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조(보험료 정산 환급 등)

①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규정에 따라 운행정보를 송부 받은 날 또는 보험회사가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운행정보가 확인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체결 시 보험회사에 고지한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첨부1]의 보험료 정산금액을 송금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운행정보를 송부한 경우에는 의무보험 가입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료 정산금액을 송금하여 드립니다.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동안의 이자금액(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까지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의 은행계좌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을 제외하고 이 특별약관을 해지하여 이 특별약관의 가입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정산하여드리지 않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첨부1] 보험료 정산금액 계산

보험료 정산금액	=	이 특별약관 가입기간의 적용보험료 (주)	×	1년간 주행거리별 할인율

(주) 적용보험료란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주말사망 및 후유장애 확대 특별약관,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1년간 주행거리	적용보험료의
1,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1,000km 초과 2,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2,000km 초과 3,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3,000km 초과 4,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4,000km 초과 5,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5,000km 초과 6,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6,000km 초과 7,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7,000km 초과 8,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8,000km 초과 9,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9,000km 초과 10,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10,000km 초과 11,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11,000km 초과 12,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12,000km 초과 13,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13,000km 초과 14,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14,000km 초과 15,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15,000km 초과	0%

[첨부2] 1년간 주행거리 계산

$$\text{1년간 주행 거리} = \left(\text{보험기간 만료시 고지된 주행거리} - \text{보험가입시 고지된 주행거리}\right) \times \frac{365(\text{윤년:}366)}{\text{주행거리 계산 기간}^{(주)}}$$

(주) 주행거리 계산 기간이란 보험 가입 시 주행거리를 고지한 날에서 보험기간 만료 시 주행거리를 고지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단, 해외 체류 등으로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받고 보험계약기간을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 제외)

3) 평균주행거리 선할인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기간이 1년이고,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가 1.2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유지 중인 자동차보험 계약에 이 특별약관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행거리 정보를 위조, 변조한 경력이 있거나 주행거리 연동 상품을 가입하고 보험료 정산 방법에 따라 산출된 정산보험료를 회사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
2. 이 특별약관 가입 시 보험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피보험자동차가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확인할수 없는 경우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라 함은 [첨부1]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 계산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총 주행거리를 연간 평균 주행거리로 환산한 것입니다. 다만, 1년 이상 가입한 주행거리 연동상품을 책임개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정산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정산 계약의 연간 주행거리를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로 정합니다.

[첨부1]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 계산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	=	보험 가입 시 고지된 주행거리	/ (	보험 가입시 주행거리 고지일자	-	최초등록 일자	) X	365 (윤년: 366)

㈜ 단, 해외 체류 등으로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받고 보험계약기간을 유예한 경우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의 계산 시 유예기간을 제외합니다.

제2조(특별약관 계약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서 할인받은 보험료의 반환 사유발생 시 환입을 위한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의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1. 책임개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 상품의 정산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의 정산 내역을 통해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정보
2. 피보험자동차의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정보
3. 기타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서류나 정보

③ 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타사와 맺은 직전 계약에서 마일리지 특별약관 정산에 사용된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의 정보를 송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위 제2항 또는 제3항의 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3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등)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는 운행정보를 변경,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가입한 후에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제2항의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4조(자동가입)

이 특별약관 가입시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후정산)」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제5조(할인보험료의 계산)

① 보험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하는 보험료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보험료 정산금액	=	이 특별약관 가입기간의 적용보험료 (주)	×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할인율

(주) 적용보험료란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주말사망 및 후유장애 확대 특별약관,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후정산)」에 의한 보험료 정산금액이 있는 경우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후정산)」에도 불구하고, [첨부2] 보험료 정산금액 계산에 따라 위 '①'의 할인보험료를 차감하여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후정산)」의 보험료 정산금액을 계산합니다.

[첨부2] 보험료 정산금액 계산

보험료 정산금액	=	이 특별약관 가입기간의 적용보험료 (주)	×	(ECO마일리지 특별약관(후정산)의 할인율) - (이 특별약관의 할인율)

㈜ 1. 이 특별약관 가입기간의 적용보험료는 이 특별약관의 할인 보험료가 감안되지 않은 적용보험료를 말합니다.
2. 적용보험료란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주말사망 및 후유장애 확대 특별약관,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ECO 전자문서 사용약정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령하기로 약정하고 「ECO 전자문서 사용약정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계약자료**라 함은 보험회사가 이 보험계약의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증권, 보험약관, 만기・분납보험료 안내문 등의 자료를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전자적 방법**이라 함은 다음의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자는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우편
2. 모바일 메신저 등의 메시지 서비스

제2조(보험계약자의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계약자료를 수령받을 전자적 방법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전자우편 : 보험계약자료를 받을 전자우편의 수령처(이메일주소) 정보
2. 모바일메신저 등의 메시지 서비스 : 핸드폰 번호 등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정보
② 제1항에서 알려준 정보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마지막 정보에 따라 보험계약자료를 교부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료 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계약자료의 교부)

① 회사는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계약자가 알려준 정보에 따라 보험계약자료를 지체없이 교부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제1항을 통해 교부된 보험계약자료를 계약사항 변경 등의 이유로 재교부 요청할 경우,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제1항을 통해 교부된 보험계약자료를 교부된 날로부터 1개월내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해당 보험계약자료를 전자적 방법을 통해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에 의해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각종 보험계약자료를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직접 수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료를 인쇄물로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약관이 자동 소멸됩니다.

제5조(보험계약자 및 보험회사의 권리와 의무)
이 특별약관에 의해 보험계약자는 보험 기간에 각종 보험계약자료를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수령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보험계약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 퍼마일 특별약관 (월정산형)

제1조(적용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회사에서 제공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이하 '운행정보'라 합니다)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운행정보 확인장치**'라 합니다)를 피보험자동차에 장착하고,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운행정보에 따라 분할 납입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은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과의 보험 만료일을 일치시키기 위한 계약으로 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위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을 보험기간 중도에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
2. 피보험자동차의 구조상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장착할 수 없거나 장착 후에도 운행정보를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계를 조작하거나,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보험기간동안 고의로 탈거, 훼손 또는 조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보통약관의『대인배상Ⅰ』및『대물배상』만 가입하는 경우 또는 가입되어 있는 경우
5.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제2항,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납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단, 해당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6.『ECO 마일리지 특별약관(후정산)』또는『평균주행거리 선할인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7.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행거리 연동 상품을 가입하고 보험료 정산 방법에 따라 산출된 정산보험료를 회사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
④ 이 특별약관은 해외 체류 등으로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받고 보험계약기간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운행정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주행하여 거리 이동이 있는 경우 주행한 거리 및 운전 습관에 대한 정보를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운행정보 확인장치**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포함한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다음의 장치를 말합니다.

1.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자동차 12V 소켓 전용 통신 장치. 이와 달리 피보험자가 별도로 구매한 GPS Tracker 등의 차량용 통신 장치는 운행정보 확인장치로 보지 않습니다.
2. 피보험자동차가 보험회사와 제휴된 자동차 제조사에서 제작된 차량인 경우 차량 출고 시 제조사에 의해 장착된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측정이 가능한 때에 한하여 위 ①의 장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의 책임개시일 이후 15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누적운행거리정보"의 촬영사진과 이를 확인한 날짜 또는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 전송하고 보험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타사와 맺은 직전 계약에서 마일리지 특별약관 정산에 사용된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의 정보를 송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 30일부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30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1년간 주행거리 확인을 위하여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기간 첫날부터 해지시점까지 주행거리 확인을 위하여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습득 및 장착이 가능한 배송지 주소를 이 특별약관 가입 즉시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단, 보험의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전까지는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배송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 주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⑥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의 책임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단,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보험의 책임개시일까지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장착하고, 동일 기간 내에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부하여야 합니다. 단, 갱신계약 등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⑦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동안 운행정보 확인장치에 운행정보가 정상적으로 측정될 수 있도록 반드시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피보험자동차에 상시 고정 장착한 상태에서 운행하여야 합니다.

⑧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날(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15일 이내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교체(대체)된 차량에 장착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교체(대체) 이전 차량과 교체(대체) 이후 차량의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및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상태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시동이 켜진 후 정상적으로 장착된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2.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파손이 발생한 경우
3.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분실 또는 도난이 발생한 경우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임의로 폐기한 경우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정상 작동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1.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LED창이 발광 되지 않거나 적색인 경우
2. 정상적으로 주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자동차보험 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주행거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⑩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재송부하는 새로운 운행정보 확인장치로 교체해야 하며, 이 경우 교체된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수취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장착하고, 동일 기간 내에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부하여야 합니다.
1. 위 제9항에 따라 보험회사에 알린 경우
2. 보험회사가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고장을 확인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린 경우
3.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정상 작동이 의심되거나 안전상의 우려가 있어 보험회사가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반납을 요청한 경우

⑪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중이던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보험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만료일, 해지일, 취소일 또는 기존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회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반납하지 않을 경우 기존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잔존가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단, 보험회사에서 회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보험계약**이 만료, 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
2. 위 제10항에 따라 새로운 운행정보 확인장치로 교체하는 경우(단, 제9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라 교체하는 경우에는 기존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반납없이 잔존가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을 말합니다.

⑫ 보험계약 만료일을 보험의 책임개시일로 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반납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⑬ 보험계약자의『퍼마일 보험료 분할납입 추가 특별약관(월정산형)』제3조(보험료의 산정 및 납입방법)에 따른 월납보험료와 정산보험료의 납입은 보험계약자 명의의 신용카드 혹은 지정은행계좌를 통해 납입이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료 납입을 위해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해당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제 수단의 변경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조(운행정보 확인에 관한 일반사항)

①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7항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에 고정 장착된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통해 운행정보를 확인합니다.

②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누적운행거리정보"의 촬영사진 또는 최종 "누적운행거리정보"의 촬영사진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간 주행거리를 15,000km 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책임개시일로부터 15일 이후에 최초 "누적운행거리정보"의 촬영사진을 제출한 경우 제출한 날로부터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통해 운행정보를 확인합니다.

③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6항에 따라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연간 주행거리를 15,000km 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책임개시일로부터 15일 이후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장착한 경우 장착한 날로부터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통해 운행정보를 확인합니다.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됩니다.

1.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및 제3조(운행정보 확인에 관한 일반사항)의 정보, 사진 등 송부 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장착하여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한 경우
   나. 피보험자동차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의 주행거리 정보를 고의로 조작하는 경우
   다. 피보험자동차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 촬영 사진 원본을 고의로 조작하는 경우
2.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3항에 따라 등록된 신용카드가 **사고카드**임이 밝혀진 경우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 및 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단, 거래정지의 경우 보험회사에 등록된 이후에 거래가 정지된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결제 신용카드의 변경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위 제1항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계약은 보험의 책임개시일 기준의 연간 보험료 전액을 납입하는 계약(이 경우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봅니다.)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의 책임개시일 기준의 연간 보험료 전액과 보험회사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회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위 제1항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사용 중이던 운행정보 확인장치는 보험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반납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잔존가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① 보험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특별약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제3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가입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

② 위 제1항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 계약이 취소로 된 경우 보험계약은 보험의 책임개시일 기준의 연간

보험료 전액을 납입하는 계약(이 경우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봅니다.)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의 책임개시일 기준의 연간 보험료 전액과 보험회사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회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위 제1항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 계약이 취소로 된 경우 사용 중이던 운행정보 확인장치는 보험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반납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잔존가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단, 보험회사에서 회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6조(보험계약자의 특별약관 계약의 임의해지)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시점까지의 보험료는 제8조(보험료 정산 환급 등) 에 따라 즉시 정산하며, 이후 보험계약은 연간보험료 전액을 납입하는 계약(이 경우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봅니다.)으로 전환됩니다.

② 이 특별약관 계약이 임의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제1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합니다.

③ 위 제1항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 계약이 임의해지된 경우 사용 중이던 운행정보 확인장치는 보험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반납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잔존가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단, 보험회사에서 회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7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을 제외한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1. 이 특별약관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제2항 및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제2항에 따라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2. 『퍼마일 보험료 분할납입 추가 특별약관 (월정산형)』제5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의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② 위 제1항 제1호에 의해 해지되는 시점은 이 특별약관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제2항 및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제2항에서 정한 납입기한 말일의 24시로 합니다.

③ 위 제1항 제2호에 의해 해지되는 시점은『퍼마일 보험료 분할납입 추가 특별약관 (월정산형)』제4조(보험료의 납입최고)에서 정한 납입최고기간 말일의 24시로 합니다.

④ 위 제1항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의무보험**의 보험료는 제외합니다)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보통약관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제3항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제8조(보험료 정산 환급 등)

① 보험회사는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누적운행거리정보"의 촬영사진과 최종 "누적운행거리정보"의 촬영사진으로 보험기간 중 주행거리에 따라 최종 보험료를 확정하며, 보험기간동안 납입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여 드립니

다.

② 다만,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누적운행거리정보"의 촬영사진 또는 최종 "누적운행거리정보"의 촬영사진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은 연간 주행거리를 15,000km 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험기간 중 주행거리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보험기간 중 주행거리	= (	보험기간 만료시 고지된 주행거리	-	보험가입시 고지된 주행거리	) ×	보험기간 / 주행거리 계산 기간 ㈜

㈜ 주행거리 계산 기간이란 보험 가입 시 주행거리를 고지한 날에서 보험기간 만료 시 주행거리를 고지 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6) 퍼마일 보험료 분할납입 추가 특별약관 (월정산형)

제1조(적용대상)

① 이 추가 특별약관은 『퍼마일 특별약관 (월정산형)』에 가입하고,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운행정보에 따라 월 단위로 분할 납입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해당 특약에 부가하여 적용합니다.

② 이 추가 특별약관에서 보험료는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주말사망 및 후유장애 확대 특별약관, 가족사랑 특별약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부모 및 자녀 확대 추가 특별약관,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는 이 추가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제3조(보험료의 산정 및 납입방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료의 산정 및 납입방법)

① 보험회사는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통해 집계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와 보험회사에서 정한 보험요율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1. **가입 보험료** = **기본료** 1회분 + (2,000 × **Km 보험료**)
2. **월납 보험료** = **기본료** 1회분 + (약정 납입일자 이전 월의 주행거리 × **Km 보험료**)
   단, 최초 "누적운행거리정보"의 촬영사진을 1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월납보험료는 연간 주행거리를 15,000km 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3. **정산 보험료** = (연간 기본료 + **보험기간 만료 시 확인된 보험기간 중 주행거리** x km 보험료)
   - 납입한 (1. **가입보험료** + 2. 월납보험료)의 합

구 분		가입 보험료	월납 보험료							정산 보험료
납입시점		청약시점	2차월	3차월	4차월	•••	11차월	12차월	13차월	12차월 이후
기본료		①	②	③	④	•••	⑪	⑫	없음	없음
주행거리 연동 보험료	주행 거리	2,000Km (0)	1차월 주행분 (1)	2차월 주행분 (2)	3차월 주행분 (3)	•••	10차월 주행분 (10)	11차월 주행분 (11)	12차월 주행분 (12)	잔여 주행분 -2,000Km
	보험료	0=2,000 x Km 보험료	1=(1) x Km 보험료	2=(2) x Km 보험료	3=(3) x Km 보험료	•••	10=(10) x Km 보험료	11=(11) x Km 보험료	12=(12) x Km 보험료	정산 x Km 보험료
납입 보험료		①+0	②+1	③+2	④+3	•••	⑪+10	⑫+11	12	**정산**

《용어풀이》

1. 이 추가 특별약관에서 **가입 보험료**라 함은 이 특별약관 가입 시점에 납입하는 보험료로서 이를 납입하는 경우에 한하여『퍼마일 보험료 분할납입 추가 특별약관 (월정산형)』이 성립됩니다.
2. 이 추가 특별약관에서 **기본료**라 함은 주행거리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적용되는 보험료입니다.
3. 이 추가 특별약관에서 **Km 보험료**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따라 1Km단위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4. 이 추가 특별약관의 **월납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약정 납입일자에 청구되며, 기본료의 경우 12회분이 모두 납부된 경우에 한해 추가 납입이 없습니다.
5. 이 추가 특별약관에서 **정산 보험료**라 함은 보험 만료 이후에 최종적으로 정산되는 보험료로서 보험기간동안 집계된 주행거리와 가입 보험료 납입 시에 적용된 2,000Km를 감안하여 계산됩니다.
6. **보험기간 만료 시 확인된 보험기간 중 주행거리**라 함은『퍼마일 특별약관 (월정산형)』제8조(보험료 정산 환급 등) 제1항에 따라 확인된 주행거리를 말합니다.

② 보험계약자는『퍼마일 보험료 분할납입 추가 특별약관 (월정산형)』을 가입하는 시점에 가입 보험료를 납입하고, 매월 보험회사가 정한 납입일자에 위 제1항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이 추가 특별약관의 월납 보험료와 정산보험료 납입은『퍼마일 특별약관 (월정산형)』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3항에 따라 등록된 신용카드 혹은 지정은행계좌로 매월 자동 징수합니다. 단, 정상적인 징수절차에도 불구하고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결제가능금액이 청구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포함) 이 추가 특별약관 제4조(보험료의 납입최고)를 따릅니다.

제4조(보험료의 납입최고)

① 보험회사는 이 추가 특별약관 제3조(보험료의 산정 및 납입방법)에서 정한 보험료가 약정 납입일자까

지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보험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약정 납입일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기간의 끝나는 날까지 계속하여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회사는 위 제1항의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기간까지 납입할 것, 그 기간 안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 해지된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납입최고를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합니다. 서면으로 안내할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 장소로 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납입최고를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해당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⑤ 보험회사는 납입최고를 전화(음성녹음)로 안내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보험업감독규정』제4-36조(통신판매시 준수사항) 제3항([부록] 참조)에 따른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에게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
2.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안내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계약자가 모두 수신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할 것
3. 계약자가 질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등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의 활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전화(음성녹음) 방법으로 전환하여 제3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실시할 것
4.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에 안내의 속도와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5.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할 것

제5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을 제외한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1. 이 추가 특별약관 제4조(보험료의 납입최고) 제1항에서 정한 납입최고기간 말일까지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는 경우

② 위 제1항에 의해 해지되는 시점은 납입최고기간 말일의 24시부터 해지됩니다.

제6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추가 특별약관 제5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의무보험을 제외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의무보험의 보험료는 제외합니다)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보통약관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제3항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② 이 추가 특별약관 제5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의무보험을 제외한 보험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퍼마일 특별약관 (월정산형)』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특별약관 계약 및 이 추가 특별약관 계약은 취소합니다.

③ 위 제2항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 계약 및 이 추가 특별약관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보험계약은 의무보

험에 대해서만 보험의 책임개시일 기준의 연간 보험료 전액을 납입하는 계약(이 경우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봅니다.)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의무보험에 대하여 보험의 책임개시일 기준의 연간 보험료 전액과 보험회사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회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위 제3항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 계약이 취소로 된 경우 사용 중이던 운행정보 확인장치는 보험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가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반납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잔존가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단, 보험회사에서 회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7조(보험계약의 부활)

① 이 추가 특별약관 제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가 환급 되지 않고,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납입해야 할 월납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해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② 위 제1항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납입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의무보험 외의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추가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퍼마일 특별약관 (월정산형)』을 따릅니다.

7) 퍼마일 커넥티드 카 서비스 추가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① 이 추가 특별약관은 『퍼마일 특별약관 (월정산형)』 제1조(적용대상)에서 정한 운행정보 확인장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특약에 부가하여 적용합니다.

1. 차량 출고 시 제조사의 표준장치 또는 옵션으로 장착된 장치(휴대전화 등에 어플리케이션을 탑재하여 사용되는 장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제조사와 자동차 보유자가 체결한 **커넥티드 카 서비스**에 의해 운행정보 수집이 가능한 장치로,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는 한 임의로 운행정보 수집을 제한할 수 없는 장치

《용어풀이》
이 추가 특별약관에서 **커넥티드 카 서비스**라 함은 자동차와 무선통신 기술을 결합하여 차량상태, 운행정보 등을 자동으로 수집하여 송수신하기로 약정한 계약을 말합니다.
예시) 현대자동차 블루링크, 기아자동차 UVO, 제네시스 GCS 등

② 이 추가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에 위 제1항의 커넥티드 카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유지된 상태인 경우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의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커넥티드 카 서비스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조사를 말합니다.)에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하는 등 이 추가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제2항의 확인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동안 피보험자동차의 커넥티드 카 서비스 및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효력이 정상적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운행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날(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7일 이내에 커넥티드 카 서비스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조사를 말합니다.)에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하는 등 이 추가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제2항의 확인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단, 교체(대체)된 자동차가 제1조(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다음을 따릅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날로부터 잔여보험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퍼마일 특별약관 (월정산형)』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8항을 따릅니다.
2.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날로부터 잔여보험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주행거리 확인을 위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판 사진을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하며, 보험기간 만료 시점 이후 30일 이내에 계기판 사진을 추가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계기판 사진의 송부는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부하여야 합니다.

제3조(운행정보 확인에 관한 일반사항)

① 보험회사는 이 추가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2항에 따른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통해 운행정보를 확인합니다.

② 커넥티드 카 서비스의 개인정보 제공 확인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 등으로 인하여 주행거리가 집계되지 않은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주행거리는 보험기간 말일 기준 일평균 주행거리와 운행정보가 미집계된 기간 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며, 보험기간 만료 시점에 일괄 적용됩니다. 단,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판 사진 등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이 추가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3항 제2호에 따라 계기판 사진을 송부한 경우 그 주행거리를 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기판 사진을 송부하지 않은 경우 교체(대체)된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는 보험기간 말일 기준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퍼마일 특별약관(월정산형) 계약의 취소)

① 보험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퍼마일 특별약관 (월정산형)』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이 추가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의 가입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 특별약관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
2.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이 추가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위 제1항에 의하여『퍼마일 특별약관 (월정산형)』계약이 취소로 된 경우 보험계약은 보험의 책임개시일 기준의 연간 보험료 전액을 납입하는 계약(이 경우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봅니다.)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의 책임개시일 기준의 연간 보험료 전액과 보험회사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회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5조(보험료 정산 환급 등)

① 퍼마일 특별약관(월정산형) 제8조(보험료 정산 환급 등) 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커넥티드 카 서비스에 의해 수집된 운행정보로 최종 보험료를 계산하여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

산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퍼마일 특별약관 (월정산형)』을 따릅니다.

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대인배상Ⅱ」,「대물배상」 또는「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상해를 입었을 때,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 또는「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보험회사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 또는「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상할 제1항 또는 제2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 [승용자동차(다인승1종·2종 승용자동차를 포함합니다), 경·3종승합자동차 및 초소형·경·4종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2.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회사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사고로 인한 손해
5.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7.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 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8.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대물배상」의 경우 보험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 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2.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
3. 보통약관 제42조(보험기간)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 계약 성립시 설정된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
4. 「대물배상」에서 양도인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③ 제1항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요율서에서 정한 불량할증을 양수인에게 적용합니다.

제3조(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제4조(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①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하여는 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양수인은 제1항의 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가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통약관「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과 상관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6호,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7호,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7호,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5호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제2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6인승 이하의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운송을 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가 구급용 자동차(앰뷸런스) 또는 장애인 택시로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경우 발생하는 사고는 보상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가 다인승1종, 다인승2종 승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비되어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계장치]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5) 다이렉트 나눔(서민우대)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거한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
2.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자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의 배기량이 1,600cc 이하 일반승용차이거나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인 경우 (단, 기명피보험자가 보유한 자동차는 반드시 1대여야 함)
   나. 피보험자동차가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경우
   다. 기명피보험자의 연령이 만30세 이상인 경우
   라.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연간 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마. 기명피보험자에게 만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바. 예외조항 : 기명피보험자의 연령이 만65세 이상이면서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의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마의 사항은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OO세**라 함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가입시점에서 만OO세인 사람을 말합니다.

3.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상 장애 정도가 '중증'(2019. 6. 30. 이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의 경우는 1~3급 장애인)인 경우로 다음의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피보험자동차의 배기량이 2,000cc 이하 일반승용차이거나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인 경우 (단, 기명피보험자가 보유한 자동차는 반드시 1대여야 함)
   나. 피보험자동차가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경우
   다.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연간 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동거가족**이라 함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합니다.

4.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연간 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로서 피보험자동차가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변경된 차량인 경우

제2조(제출서류)

이 특별약관 가입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시군구(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득관계 증명서
      (1) 제출대상 :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2) 소득증빙기간 : 이 특별약관 가입시점 이전 발급가능한 직전년도 1년
(3) 예외조항 : 기명피보험자의 나이가 만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서
(나) 사업등록자인 경우	소득금액 증명서
(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인적용역 제공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라) 무소득자인 경우	사실증명원 (세무서 발급)
(마) 기타	그 밖에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예: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기명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정하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서류

나. 기명피보험자 및 부양자녀가 명기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단,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나.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다. 제2호 가 목의 소득요건 증빙서류
4.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 변경된 차량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
나. 제2호 가 목의 소득요건 증빙서류

제3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및 기타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 실버 안전운전자 우대 특별약관

제 1 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연령이 **만 65 세** 이상인 경우
2. 「기명피보험자 1 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3.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운전 인지·지각 평가'** 또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4. 제 3 호의 '운전 인지·지각 평가' 결과의 점수가 42 점 이상인 경우 또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지의 최종 판정이 운전능력진단 1~3 등급인 경우(단,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결과지의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수료」등급인 경우에도 가입 가능합니다). 단, '운전 인지·지각 평가'의 경우 검사일로부터 보통약관을 가입하는 날까지의 경과기간이 2 년, '인지능력 자가진단'의 경우 검사일로부터 보통약관을 가입하는 날까지의 경과기간이 3 년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만65세**라 함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특별약관 가입시점에서 만65세인 사람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운전 인지·지각 평가**라 함은 도로교통공단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교통안전교육에 포함되는 검사를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인지능력 자가진단**이라 함은 도로교통공단이 2019년 1월 1일부터 운영하는 교통안전교육에 포함되는 검사를 말합니다.

제 2 조(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 1 조(가입대상)의 제 3 호 및 제 4 호의 조건이 만족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전 인지·지각 평가' 또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의 결과가 포함된 교통안전교육 교육필증 또는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 3 조(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할인)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개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 인지·지각 평가' 또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검사일이 보통약관 보험기간 첫날 이전인 경우 :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첫날
2. '인지능력 자가진단' 검사일이 보통약관 보험기간 첫날 이후인 경우 : '인지능력 자가진단'의 검사일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가입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시점과 동일하게 종료됩니다.
③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가입기간 동안의 해당 보험료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하여 드립니다.

제 4 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기명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입대상임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 5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특별약관

제 1 조(적용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에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라 함은 영상기록장치를 통해 영상정보 등을 기록하고 해당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로 차량에 고정 장착된 전용 기기를 말합니다. 다만, 휴대전화 및 태블릿 PC 등에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사용되는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일부터 과거 3 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 4 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제 5 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로 인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험료를 보험회사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
2. 보험회사가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의 장착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조작하여 제출하는 경우

제 2 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가입 시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의 제조사, 모델명, 제조번호, 연식, 부속품가액 등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장착여부를 보험회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사진 또는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제 3 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에 영상기록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피보험자동차에 상시 고정 장착해 놓고 작동시켜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고와 관련된 영상 기록 정보를 보험회사가 요청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제 2 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제 1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남은 보험기간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 4 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①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 1 조(적용대상) 제 2 항의 가입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한 경우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 3 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③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 2 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8)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자동차상해 특별약관」,「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중 어느 하나를 가입한 경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단, 피보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의 피보험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피보험자에게「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자기차량손해」,「자동차상해 특별약관」,「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사망보험금을 제외하며, 보장범위 관련 특별약관의 보험금은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의식불명상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이 있으면서 대리인도 없는 때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하는 각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지정대리청구인의 순위는「민법」제1000조, 제1003조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릅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 제3항에서 정한 동일한 순위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동일한 순위의 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1인에 한하여 지정대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취소)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 제2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1항에 의하여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 등)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등)
2. 지정대리청구인과 피보험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보험금지급청구서(회사양식)
4. 지정대리청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5. 동일순위의 지정대리청구권자가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 제2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3항에서 정한 동일순위의 다른 지정대리청구권자들로부터 지정(동의)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보험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② 제1항에 의해서 보험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지정대리청구권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이 특별약관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취소)에 의하여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지정대리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9)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하며 보통약관 「대물배상」을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물배상」과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의무보험과 관련하여 보통약관 「대물배상」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제2조(보상 내용)

이 특별약관의 대물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2절 대물배상」과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제7조(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0)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추가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또는 「대물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가입 시 해당 담보에 한하여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 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대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또는 「대물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별약관」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또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보험회사가 보상할 제1항의 손해 중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액과 보험대차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보험대차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③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사고로 인한 보험대차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해당 대여사업자의 타당한 영업손해에 대해서는 보통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4. 휴차료' 항목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④ 제3항의 영업손해의 경우 해당 보험대차 대여요금의 50%를 한도로 보상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보상할 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3항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의 보험대차의 사고는 대여사업자로부터 보험대차를 인수한 때부터 보험대차 인정기간 마지막 날의 24시를 한도로 보험대차를 반납할 때까지의 사고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대차 인정기간 만료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대차**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그 피보험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다른 자동차를 대차받은 경우 그 자동차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 제14조, 제19조, 제23조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제4조, 「대물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의 제4조,「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제4조에서 정하는 사항(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 범위 이외의 자가 보험대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가 보험대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보험대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1) 자녀 할인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아래에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첫 날을 기준으로 기명피보험자에게 만1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단,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는 보험기간 첫 날을 기준으로 기명피보험자에게 만10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자녀**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를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출산 예정인 자녀**란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명의의 임신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태아를 말합니다.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제1조(가입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계약 등을 통해 제1조(가입대상)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기간)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과 같습니다. 단, 자녀를 출산 예정이고, 임신확인서의 임신확인일이 보험기간 첫 날 이후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의 임신확인일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 시작일로 합니다.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가입대상)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기간은 보험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할인 및 정산)
①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에 한하여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기간) 제2항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 회사는 위

제1항에 의하여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2) 차선이탈 경고장치 장착 할인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 최초 출고시 **차선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고『차선이탈 경고장치 장착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차선이탈 경고장치**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차선 이탈시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차선이탈 경고장치(LDWS: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또는 차선 이탈시 핸들을 조향하여 차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차선유지 지원장치(LKAS:Lane Keeping Assist System)**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6의 29 '차로이탈경고장치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기를 말합니다. 다만 블랙박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포함된 경우와 출고 이후 사후적으로 장착된 경우는 이 특별약관의 차선이탈 경고장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차선이탈 경고장치의 장착여부를 보험회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차선이탈 경고장치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사진 및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차선이탈 경고장치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차선이탈 경고장치를 상시 작동시켜야 하며, 소음 등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게 충분히 안전운전을 위한 경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볼륨, 진동, 경고등의 크기나 주기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해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차선이탈 경고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남은 보험기간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 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차선이탈 경고장치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에

는 제외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3) 전방충돌 방지장치 장착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를 최초 출고시 **전방충돌방지장치**를 장착하고『전방충돌방지장치 장착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전방충돌방지장치**라 함은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전방충돌경고장치(FCW(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 또는 차량을 감속 또는 정지시키기 위하여 자동으로 제동 장치를 작동시키는 **자동비상제동장치(AEB(Autonomous Emergency Braking System)**등을 의미합니다. 다만 블랙박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포함된 경우와 출고 이후 사후적으로 장착된 경우는 이 특별약관의 전방충돌방지장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전방충돌방지장치 장착여부를 보험회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전방충돌방지장치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사진 및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전방충돌방지장치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전방충돌방지장치를 상시 작동시켜야 하며, 소음 등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게 충분히 안전운전을 위한 경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볼륨, 진동, 경고 등의 크기나 주기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해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전방충돌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남은 보험기간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할인 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 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전방충돌방지장치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 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4)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될 수 있습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

《용어풀이》

[소득세법 제50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용어풀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보험료의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로서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공제료를 말한다.

② 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보증·공제의 보험료·보증료·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2. 기명피보험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 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경우

《용어풀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

①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1)부터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증명서류의 제출)

①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의한 장애인 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 증명서류"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적용대상)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명피보험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증명서류를 제1항의 장애인 증명서류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제3조(장애인 전용 보험으로의 전환)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제2조(증명서류의 제출)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제1조(적용대상)의 적용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의 납입보험료를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연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됩니다.

제4조(전환 취소)

① 보험계약자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의 전환 취소를 보험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지체 없이 전환을 취소하여 드리며, 취소한 이후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일반 보장성 보험으로 표시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전환을 취소한 이후에는, 재전환을 요청 할 수 없습니다.

③ 최초 전환을 요청했던 당해연도에 제1항에 따라 전환 취소를 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가 아닌 일반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됩니다.

제5조(준용규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15)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기록을 분석하여 생성한 운전습관 점수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일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이 특별약관은 보험회사와 자동차제조사 간의 제휴사업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해당 제휴사업계약이 없거나, 종료되어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안전운전점수가 없는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④ 이 특별약관은 「티맵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 운행기록에 근거한 **안전운전점수**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동의를 하거나 자동차제조사가 발행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안전운전점수**라 함은 보험회사와 제휴사업계약이 체결된 자동차제조사가 피보험자동차 운행기록을 분석하여 생성한 운전습관 점수입니다.

제3조(보험료 할인)
보험회사는 **안전운전점수 산정기준**에 의해 확인된 안전운전점수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 별도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안전운전점수 산정기준**이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① 안전운전점수 확인일 기준 최근 90일간의 피보험자동차의 운행기록을 기반으로 해당 기간 최소 1,000km 이상 주행한 경우
② 90일간 운행기록이 있을 수 없는 신차 등의 경우는 점수 확인일 기준 최근 1,000km 운행기록이 있는 경우
※ 안전운전점수 산정 기준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제휴 자동차제조사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보험회사가 확인한 안전운전점수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기록에 근거한 점수가 아닌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르게 안전운전점수를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② 제1항에 의해 무효가 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6) 티맵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 단말기"라 합니다)에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안전운전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이 특별약관의 가입 시점에 **안전운전점수**가 보험회사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3.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 운전 특별약관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안전운전프로그램**이란 단말기 등에서 구현되는 안전운전 관련 프로그램으로 특별약관 가입시점에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안전운전점수**란 안전운전프로그램을 작동하고 주행하여 산정된 점수를 말합니다. 단, 안전운전점수 확인일 이전 6개월 이내에 500km이상 주행한 경우에 한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단말기가 아니거나 본인의 안전운전 점수가 아닌 경우
2.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특별약관의 무효, 해지, 취소, 철회 등으로 할인 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이 특별약관은 보험회사와 안전운전프로그램 회사 간의 제휴사업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해당 제휴사업 계약이 없거나, 종료되어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안전운전점수가 없거나 시스템 오류로 안전운전점수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4.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계약자 등은 특별약관 가입 시 안전운전점수의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른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며, 그 밖의 특별약관의 가입 및 적용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해야 합니다.

제3조(보험료 할인)

①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시점에 기명피보험자의 안전운전점수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 별도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②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험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단, 제1조(적용대상) 제1항 제3호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에서 제외합니다.

③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을 받지 못하는 등 안전운전점수 측정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차량 또는 다른 교통수단에서 안전운전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
2. 타인이 기명피보험자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안전운전프로그램을 작동한 상태로 운전하도록 하는 경우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및 해지)

① 보험회사가 확인한 안전운전점수가 기명피보험자 본인의 안전운전점수가 아닌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②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기간 동안에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제①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변경일 24시부터 이 특별약관은 해지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해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7) 커넥티드카 할인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및 긴급상황 발생 정보를 보험회사 또는 자동차제조사에 통보하는 장치(이하 '**사고통보장치**'라 함)가 장착되고 자동차제조사와의 무선통신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용어풀이>의 ②에서 규정하는 기능이 상시 작동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일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보험회사가 사고통보장치의 장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특별약관 제3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조작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위 제1항을 보험회사와 자동차제조사 간의 제휴사업계약에 따라 확인하는 경우, 해당 제휴사업계약이 종료되어 제1항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이 특별약관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사고통보장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① 차량 출고 시 자동차제조사의 표준장치 또는 옵션으로 장착된 장치(휴대전화 등에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사용되는 장치는 해당되지 않음)
② 피보험자동차의 시동을 켠 상태에서는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아래의 기능이 상시 작동되어 제휴자동차제조사로 송신·수집되며, 자동차제조사와의 무선통신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의로 작동을 중지할 수 없는 장치
가. 에어백이 전개되는 사고 발생 시 자동송신 기능
나. 차량운행정보(운행시간, 운행속도 등) 저장 등
③ 피보험자동차의 에어백이 전개되는 사고발생 정보가 자동차제조사 또는 보험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됨으로서 신속한 응급조치가 가능할 것

제2조(보험회사의 사고 및 긴급상황 확인 및 조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에어백 전개사고 정보를 자동차제조사로부터 받은 경우 자동으로 사고접수를 하고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드립니다. 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3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개인정보처리 동의를 하거나 자동차제조사가 발행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위 제1조(적용대상)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해야 합니다.

제4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통보장치가 상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통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 중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인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제조사에 수집된 사고당시 차량운행정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의 확인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① 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통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③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와 관련된 차량운행정보의 확인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제6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 공제 지급)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8) 후측방충돌방지장치 장착 할인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 최초 출고시 **후측방충돌방지장치**를 장착하고 「후측방충돌방지장치 장착할인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후측방충돌방지장치**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차량에 장착된 레이더 등을 이용하여 차량의 후측방 영역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후측방충돌 경고장치(BSD:Blind Spot Detection) 또는 차량에 장착된 레이더 등을 이용하여 차량의 후측방 영역을 감지하고, 위험이 감지되면 운전자에게 정보를 알려주며 충돌위험시 차체를 제동하여 충돌회피를 도와주는 후측방충돌방지 보조장치(BCA:Blind Spot Collision Avoidance Detection)를 말합니다. 다만 블랙박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포함된 경우와 출고 이후 사후적으로 장착된 경우는 이 특별약관의 후측방충돌방지장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후측방충돌방지장치 장착여부를 보험회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후측방충돌방지장치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사진 및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후측방충돌방지장치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후측방충돌방지장치를 상시 작동시켜야 하며, 소음 등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게 충분히 안전운전을 위한 경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볼륨, 진동, 경고등의 크기나 주기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해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의 후측방충돌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남은 보험기간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 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후측방충돌방지장치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9) 어라운드뷰모니터 장착 할인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 최초 출고시 **어라운드뷰모니터**를 장착하고 「어라운드뷰모니터 장착 할인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어라운드뷰모니터**라 함은 자동차운행시 차량 전후좌우에 장착된 카메라 등의 장치로 촬영된 영상을 이용하여 차량주위 360도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을 만들어 차안의 모니터를 통해 운전자에게 보여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다만 블랙박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포함된 경우와 출고 이후 사후적으로 장착된 경우는 이 특별약관의 어라운드뷰모니터 장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어라운드뷰모니터 장착여부를 보험회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어라운드뷰모니터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사진 및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어라운드뷰모니터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어라운드뷰모니터를 상시 작동시켜야 하며,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위한 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치를 관리해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해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어라운드뷰모니터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남은 보험기간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어라운드뷰모니터 장치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0) 헤드업디스플레이 장착 할인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 최초 출고시 **헤드업디스플레이**를 장착하고 「헤드업디스플레이 장착 할인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헤드업디스플레이**라 함은 자동차운행시 운전석 앞 유리창에 네비게이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주행에 필요한 정보를 표시하여 정면을 상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다만 휴대전화 등에 애플리케이션이 탑재되거나 블랙박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포함된 경우와 출고 이후 사후적으로 장착된 경우는 이 특별약관의 헤드업디스플레이 장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헤드업디스플레이 장착여부를 보험회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헤드업디스플레이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사진 및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헤드업디스플레이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해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동차의 헤드업디스플레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남은 보험기간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6조(보험금 공제 지급)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제3조 내지 제5조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1) 기간제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①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가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통약관「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과 상관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별약관은「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6호,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7호,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7호,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선택한 기간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합니다.

제3조(책임기간)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회사의 책임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되어 마지막날 24시에 끝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제2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6인승 이하의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운송을 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2)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장착 할인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장착하고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장착 할인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페달오조작방지장치**라 함은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거나 저속에서 비정상적으로 가속하는 실수를 감지해 급가속을 억제하고 필요 시 제동을 거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PMSA : Pedal Misapplication Safety Assist)를 말하며, 다음 중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 ① 차량 출고 시 자동차제조사의 표준장치 또는 옵션으로 장착된 장치
> ② 출고 이후 사후적으로 장착된 경우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장치
> 예)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장치 : 국토교통부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받은 제품 등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장착여부를 보험회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사진 및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상시 작동시켜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해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동차의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남은 보험기간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 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3) 차량 5 부제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교체(대체) 등의 사유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교체(대체)시점을 기준으로 해지되며 해지된 시점까지를 특별약관 보험기간으로 보아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정한 '차량5부제 특별약관 가입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보험계약 체결시점(차량대체시 대체시점)의 피보험자동차의 차량가액(부속품 가액 등 포함)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가 아닌 경우

② 회사는 **의무보험**의 보험기간 중에 특별약관상 의무위반 등으로 이 특별약관을 해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라 함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의무보험**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제2조(특별약관 보험기간)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자가 특별약관에 가입한 시점부터 '차량 5부제' 상황이 종료(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근거한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종료일)되는 시점까지로 합니다. 이 경우 특별약관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해지된 시점까지를 특별약관 보험기간으로 보아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5월 중 회사가 안내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6년 6월 15일까지 이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는 2026년 4월 1일부터 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드립니다. (2026년 6월 15일까지 회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 특별약관 가입이 어려운 경우, 2026년 6월 15일 이후에 가입하더라도 2026년 4월 1일부터 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드립니다.) 단, 2026년 4월 1일부터 신청서 제출일 사이에 **비운행 요일**에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약관 가입일자부터 할인 기간을 적용하며, 신청서 제출일부터 특약 가입일 사이에 비운행 요일에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약관 가입이 불가합니다.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비운행 요일**이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별표 10]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에 관한 기준의 1-9. 출입제한 방법에 따른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른 출입제한 차량 요일을 말합니다.

차량번호판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비운행요일	월	화	수	목	금	

*법정공휴일(국가에서 정한 임시/대체공휴일 및 노동절을 포함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운행**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당해 비운행 요일에 주행한 총 거리의 합이 0km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는 회사가 요구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 또는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신청서
2.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3. 그 밖에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

제4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등은 비운행 요일에는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운행요일에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등은 비운행 요일 운행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만료일 이전에 절차를 안내하면 비운행 요일 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보험만료일 30일 이내에 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보험계약자 등은 이 특별약관 제3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른 제출 또는 이행을 하지 않았거나, 해당 정보를 위변조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해지)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이 이 특별약관 제4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제4조 제1항에 따른 비운행 의무 최초 1일 위반은 제외)

② 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이 비운행요일에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보험료 정산 등)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 <별표>에서 정한 보험료 정산 금액을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보험기간)의 보험기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제3조 제2호의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 등으로 정산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4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2항에 따라 보험계

약자 등에게 안내한 비운행 요일 운행여부 확인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보험만료일 이전에 제4조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안내를 하지 않았거나 보험만료일 이전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으로 비운행 요일 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정산 금액을 지급합니다.

③ 퍼마일 특별약관(월정산형)을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만료일 이후 최종 주행거리가 확정되면, 5부제 할인 보험료와 최종 주행거리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④ 정산기한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동안의 이자금액(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까지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별표] 보험료 정산 금액

보험료 정산금액
적용보험료 X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할인율)

주) 적용보험료란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주말사망 및 후유장애 확대 특별약관, 가족사랑 특별약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부모 및 자녀 확대 추가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산시스템 미비 등 회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산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정산기한이 도래하는 계약은 시스템 개발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다만, 2026년 6월 30일까지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6년 7월 1일에 즉시 정산해드립니다.

⑥ 회사는 제6조(특별약관의 해지)에 따라 특별약관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 비운행요일 운행 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그 최초 운행 전날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제7조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⑦ 보험료를 정산한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동안 비운행요일에 사고가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⑧ 단,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보험기간) 제2항에 따라 특별약관 가입일을 2026년 4월 1일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일부터 실제 특별약관 가입 시점까지는 비운행 요일에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⑨ 보험계약자는 제1항의 은행 계좌번호 등이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른 "나이(연령)"는 사고발생일 기준 만 나이(연령)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 사 망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 목	지급 기준
1. 장 례 비	지급액: 5,000,000원
2. 위 자 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3.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 (단, 사망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 (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항 목	지급 기준
	《용어풀이》 ①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②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③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나)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산식>**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 (연간수입액×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노무기여율×투자비율 (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 3.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용어풀이》** ① 이 보험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② 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항 목	지급 기준
	<산식>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2 *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용어풀이》** ① 기술직 종사자가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라 함은 자격증,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의 입증 서류를 보험회사로 제출한 것을 말함.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그 밖의 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복무예정자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항 목	지급 기준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6) 외국인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 이외의 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62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 월수>

피해자의 나이	취업가능월수
62세부터 67세 미만	36월
67세부터 76세 미만	24월
76세 이상	12월

(3)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5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5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 취업시기는 19세로 함.

(5) 외국인

(가) 적법한 일시체류자(*1)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2)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

항 목	지급 기준
	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1)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2)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 마. 호프만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단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산식>** $\frac{1}{1+i} + \frac{1}{1+2i} + \cdots\cdots\cdots + \frac{1}{1+ni}$ I =5/12%, n=취업가능월수

나. 부 상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table>
<tr><th>항 목</th><th>지급 기준</th></tr>
<tr><td>1. 적극손해</td><td>가. 구조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입원일수가 7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한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td></tr>
<tr><td>2. 위자료</td><td>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만원)
<table>
<tr><th>급별</th><th>인정액</th><th>급별</th><th>인정액</th><th>급별</th><th>인정액</th><th>급별</th><th>인정액</th></tr>
<tr><td>1</td><td>200</td><td>5</td><td>75</td><td>9</td><td>25</td><td>13</td><td>15</td></tr>
<tr><td>2</td><td>176</td><td>6</td><td>50</td><td>10</td><td>20</td><td>14</td><td>15</td></tr>
<tr><td>3</td><td>152</td><td>7</td><td>40</td><td>11</td><td>20</td><td></td><td></td></tr>
<tr><td>4</td><td>128</td><td>8</td><td>30</td><td>12</td><td>15</td><td></td><td></td></tr>
</table>
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td></tr>
</table>

항 목	지급 기준
	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함.
3. 휴업손해	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용어풀이》** ①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함. **<산식>** $1일\ 수입감소액 \times 휴업일수 \times \frac{85}{100}$ 나. 휴업일수의 산정 (1) 휴업일수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2)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취업가능연한: 65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며 피해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70세로 함.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용어풀이》** ① **가사종사자**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

<table>
<tr><th>항 목</th><th>지급 기준</th></tr>
<tr><td></td><td>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td></tr>
<tr><td>4. 간병비</td><td>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인정 대상
(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용어풀이》
①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다. 지급 기준
(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table>
<tr><th>상해등급</th><th>인정일수</th></tr>
<tr><td>1급~2급</td><td>60일</td></tr>
<tr><td>3급~4급</td><td>30일</td></tr>
<tr><td>5급</td><td>15일</td></tr>
</table></td></tr>
<tr><td>5. 그 밖의 손해배상금</td><td>위 1. 내지 3.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td></tr>
</table>

다.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table>
<tr><th>항 목</th><th>지급 기준</th></tr>
<tr><td>1. 위자료</td><td>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나)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른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①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②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1) 후유장애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최초 후유장애 판정 시점의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 : %, 만원)
<table>
<tr><th>노동능력상실률</th><th>인정액</th></tr>
<tr><td>45% 이상 50% 미만</td><td>400</td></tr>
<tr><td>35% 이상 45% 미만</td><td>240</td></tr>
<tr><td>27% 이상 35% 미만</td><td>200</td></tr>
<tr><td>20% 이상 27%미만</td><td>160</td></tr>
<tr><td>14% 이상 20% 미만</td><td>120</td></tr>
<tr><td>9% 이상 14% 미만</td><td>100</td></tr>
<tr><td>5% 이상 9% 미만</td><td>80</td></tr>
<tr><td>0 초과 5% 미만</td><td>50</td></tr>
</table>
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 위자료를 지급함. 다만,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함.
</td></tr>
<tr><td>2. 상실수익액</td><td>
가. 산정방법: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단,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td></tr>
</table>

항 목	지급 기준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 가사종사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학생포함)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6)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호프만 계수 사망한 경우와 동일

항 목	지급 기준
3. 가정간호비	가. 인정 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 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항 목	지급 기준
1. 수리비용	가. 지급대상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수리비 (가)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부득이하게 새 부분품으로 교환수리하는 경우에는, 조달 가능한 새 부분품 중 조달기간 및 조달가격 등을 고려할 때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분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나) 경미한 손상(*1)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2)으로 교환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1) '경미한 손상'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2)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2)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가) 내용연수(*2)가 지난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 (*2) '내용연수'라 함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합니다.
2. 교환가액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항 목	지급 기준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
3. 대차료	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1)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 의 요금(*2).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차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3)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1)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다만, 배기량, 연식만을 고려하는 경우 차량성능을 반영하기 어려운 자동차(예 : 하이브리드 차량,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크기(길이, 너비, 높이)를 고려합니다. (*2)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3)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1)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 (*1)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이라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 (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위(1)-(가)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5% 상당액 (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

항 목	지급 기준
	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1)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1)"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를 말합니다.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10일
4. 휴차료	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5. 영업손실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다. 인정기간

항 목	지급 기준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7. 견인비용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피해물을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 등까지 운반하거나 그 곳까지 운반하기 위한 임시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필요 타당한 비용

[별표 3] 과실상계 등

항 목	지급 기준
1. 과실상계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대인배상Ⅰ」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다만, 차량운전자(*1)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1) "차량운전자"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차량운전자에는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자를 포함합니다.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2. 손익상계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 4]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4. 기왕증	가. 기왕증(*1)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 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

항 목	지급 기준
	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1) '기왕증'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	감액비율(*1)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100%
음주운전, 무면허운전(*2),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운전자의 차량 동승	40%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상호 의논합의 동승	20%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운전자의 강요 동승	0%

(*1) 다만,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무면허운전은 동승자가 운전자의 무면허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감액 적용

2. 수정요소

수정요소	수정비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10~20%

[별표 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2급	800만원	1,600만원	2,700만원
3급	75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4급	700만원	1,400만원	2,300만원
5급	500만원	1,000만원	1,700만원
6급	400만원	800만원	1,300만원
7급	250만원	500만원	800만원
8급	180만원	360만원	600만원
9급	140만원	280만원	470만원
10급	120만원	240만원	400만원
11급	120만원	200만원	330만원
12급	120만원	180만원	230만원
13급	80만원	130만원	180만원
14급	50만원	80만원	120만원

(주) 1. 상해등급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2. 책임개시 2022년 12월 31일 이전 계약의 경우에도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위의 지급기준을 적용합니다.

2) 후유장애 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애 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급	1,350만원	2,700만원	4,500만원	9,000만원
3급	1,200만원	2,4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4급	1,050만원	2,100만원	3,500만원	7,000만원
5급	900만원	1,8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6급	75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
7급	6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8급	450만원	9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9급	360만원	72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10급	270만원	540만원	900만원	1,800만원
11급	210만원	420만원	700만원	1,400만원
12급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3급	90만원	180만원	300만원	600만원
14급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400만원

(주) 장애등급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에 의함

7조, 8조 위반시 형사합의금 지원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붙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해내용
1급	3천만원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등골뼈)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위팔 부위 완전 절단(팔꿈치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0.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해당한다) 14. 화상.좌창.괴사상처 26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1,5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목뼈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목뼈고정기(할로베스트)나 수술

		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아래팔 완전 절단(손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9. 엉덩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0. 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넓적다리뼈 윗목부 분쇄 골절, 돌기 아랫부분 분쇄 골절, 관절융기 분쇄 골절, 정강이뼈(경골) 관절융기 분쇄 골절 또는 정강이뼈 먼쪽 관절 내 분쇄 골절 12.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팔다리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1,2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4급에 해당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상(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9. 어깨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위팔 부위 완전 절단(팔꿈치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손목 부위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넓적다리뼈 또는 정강이뼈 골절(넓적다리뼈머리 골절은 제외한다) 14. 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무릎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발목관절의 손상으로 발목뼈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발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1천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흉부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위팔뼈목 골절 9. 위팔뼈 몸통 분쇄성 골절 10. 위팔뼈 위관절융기 또는 위팔뼈 먼쪽 부위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작은 머리 골절 등에 해당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노뼈 먼쪽 부위 골절과 자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12. 자뼈 몸쪽 부위 골절과 노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13. 아래팔 완전 절단(손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노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손목뼈간 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손목뼈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엉치뼈 골절 및 꼬리뼈 골절을 포함한다) 19. 골반뼈 관절의 분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무릎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목말뼈 또는 발꿈치뼈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5. 팔다리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상처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

		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9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겹보임[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몸통 또는 하부 몸통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6. 위팔뼈 몸통 골절 7. 노뼈머리 또는 자뼈 갈고리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노뼈와 자뼈의 몸통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노뼈 붓돌기 골절 10. 노뼈 먼쪽부위 관절내 골절 11. 손목 손배뼈 골절 12. 손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엉덩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5. 엉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넓적다리뼈 또는 몸쪽 정강이뼈의 견열골절 18.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무릎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무릎뼈 골절 21. 발목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발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발목뼈 골절(목말뼈 및 발꿈치뼈는 제외한다) 24. 발목발허리(리스프랑)관절 손상 25. 3개 이상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발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무릎인대, 넓적다리 사두건 또는 넓적다리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6개 이상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팔다리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팔다리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7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심장 타박 5. 폐타박상(한쪽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혈액가슴증) 또는 기흉(공기가슴증)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어깨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어깨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어깨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위팔뼈 대결절 견열 골절 13. 위팔뼈 먼쪽 부위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14.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팔꿈치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팔꿈치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노뼈 몸통 또는 먼쪽 부위 관절외 골절 18. 노뼈목 골절 19. 자뼈 팔꿈치머리 부위 골절 20. 자뼈 몸통 골절(몸쪽 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손목손허리뼈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무릎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무릎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반달모양)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발목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먼쪽 정강이뼈・종아리뼈 분리 28. 2개 이하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0.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3개 이상 5개 이하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500만원	1. 다발성 얼굴 머리뼈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얼굴 머리뼈 골절 2. 겹보임을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빗장뼈) 골절 6. 어깨뼈(어깨뼈가시, 어깨뼈몸통, 가슴우리 탈구, 어깨뼈목, 봉우리돌기 및 부리돌기 포함) 골절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노뼈머리 또는 자뼈 갈고리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자뼈 붓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노손목관절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노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손배뼈 외 손목뼈 골절 15. 손목 부위 손배뼈.반달뼈 인대 파열 16. 손목손허리뼈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손허리뼈 골절 18. 손허리손가락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뼈 관절의 분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엉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종아리뼈 몸통 골절 또는 뼈머리 골절 23. 발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발목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3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위턱뼈, 아래턱뼈, 이틀뼈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갈비뼈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가로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어깨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위팔뼈 위관절융기 또는 위팔뼈 먼쪽 부위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작은머리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팔꿈치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손허리뼈 골절 13. 손가락뼈의 몸쪽 손가락뼈 사이 또는 먼쪽 손가락뼈 사이 골절 탈구 14. 다발성 손가락뼈 골절 15. 무지 손허리손가락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 골절(엉치뼈 골절 및 꼬리뼈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무릎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손발가락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팔다리의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팔다리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팔다리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팔다리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팔다리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240만원	1. 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갈비뼈 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장뼈(흉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팔꿈치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노손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0. 손가락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손가락관절 탈구 12. 무릎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무릎인대, 넓적다리 사두건 또는 넓적다리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손가락・발가락 폄근힘줄 1개의 파열로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팔다리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200만원	1. 3cm 이상 얼굴 부위 찢김상처(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찢김상처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어깨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손발가락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다리 3대 관절의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60만원	1. 뇌진탕

		2. 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손가락뼈 골절 또는 손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120만원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얼굴 부위 찢김상처 3. 척추 염좌 4.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 5. 팔다리의 찢김상처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팔다리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	80만원	1. 결막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급	50만원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장간막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손발가락 관절 염좌 3. 팔다리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 영역별 세부지침

영역	내용
공통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 이라 한다)한다. 나.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에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 라.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은 소아로 인정한다. 마.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 피판술이나 피부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얼굴 부위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손 부위, 발 부위에 국한된 손상에 대해서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
머리		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머리뼈안의 출혈(경막상.하 출혈, 뇌실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활액낭종, 거미막 낭종, 머리뼈 골절(머리뼈 기저부 골절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 타박상을 말한다. 나. 4급 이하(4급에서 14급까지를 말한다)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점 이상 12점 이하, 경도는 13점 이상 15점 이하를 말한다. 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바.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준용한다. 사. 두피 타박상, 찢김상처(열창)는 14급에 준용한다.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를 적용한다. 외상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부상 및 질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만 적용한다.
흉.복부		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장막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③심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의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
척추		가.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 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 다.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으로 본다. 라.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으로 본다.
팔·다리	공통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팔다리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 마.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바.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아. 관절 분리절단의 경우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 자.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으로 본다. 차.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12급)로 본다. 카. 팔다리 관절의 인공관절 치환 후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타. 보존적으로 치료한 팔다리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파. 수술을 시행한 팔다리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하.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거.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선모양)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 너. 손발가락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더. "근육(근), 힘줄(건), 인대 파열"이란 완전 파열을 말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다. 러. 팔다리뼈 골절 중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팔다리뼈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로 본다. 다만, 개방정복(피부와 근육 절개 후 골절된 뼈를 바로잡는 시술을 말한다)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 머. 팔다리뼈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본다. 버.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 서.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개 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말한다.
	팔	가.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 나.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다. 6급의 어깨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동시 확인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 라.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
	다리	가. 양측 두덩뼈가지(치골지) 골절, 두덩뼈(치골) 위아래 가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 나. 엉치뼈 골절, 코리뼈 골절도 골반뼈 골절로 준용한다. 다. 무릎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 라.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발목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을 준용한다. 마. 넓적다리뼈 또는 정강이뼈・종아리뼈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으로 본다. 바. 정강이뼈 후과의 단독 골절 시 발목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에 준용한다. 사. 엉덩관절이란 넓적다리뼈머리와 골반뼈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아.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고리를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 자. "다리의 3대 관절"이란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차. 무릎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완전파열(또는 이에 준하는 파열)로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한 파열에 적용한다. 카.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두덩뼈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붙임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장애 급별	한도금액	신체장애 내용
1급	1억 5천만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1억 3,5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1억 2,0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1억 5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 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허리(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	9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7,5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등골뼈)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6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급	4,500만원	1. 한쪽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	3,8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 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급	2,700만원	1. 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급	2,30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2급	1,900만원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빗장뼈), 복장뼈(흉골), 갈비뼈, 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	1,5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급	1천만원	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주의사항(비고)♠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가락뼈사이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몸쪽가락뼈사이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함)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나. 전간(癲癇)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사지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痲痺)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삭제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3.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4. 제19조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5.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6.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8.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④ 삭제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삭제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

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1항 제2호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제2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산업 재해 등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 법입니다.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

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제3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1항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이용 주체, 이용 목적, 이용 날짜,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조회를 한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때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등이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한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신용정보회사등은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신용정보주체는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으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또는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회는 해당 업무를 직접 수

행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신용정보회사등이 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2항, 제3항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등록기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제2항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허가,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량 충당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선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보유 차량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에서 업종 변경을 위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로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거나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차령이 8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었던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신규로 교체한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유상운송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의 증가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사업용자동차 및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휴일이 연속되는 경우 등 수송수요가 수송력 공급을 크게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수송력 공급의 증가가 필요한 경우
4. 학생의 등·하교나 그 밖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2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일 것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통학버스일 것
   다.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지 않을 것

4의2.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이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이하 이 조에서 "학원"이라 한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체육시설"이라 한다)에서 직접 소유(공동소유를 포함한다)하여 운영하는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일 것. 다만,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 출고되었으나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차량구조 변경이 승인된 차량의 경우에는 9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포함한다.

나.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에 이용되는 자동차일 것.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의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지 않을 것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합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을 담보하는 대인배상Ⅰ 및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1사고당 2천만원의 보상한도 금액을 말하며, 이하 "대물의무보험금액"이라 합니다)을 담보하는 대물배상을 말합니다. 다만, 대물 의무보험금액 이상을 담보하는 대물배상의 경우 대물의무보험금액 한도만을 말합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 등)

① 법 제30조의5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외장부품
2. 등화부품
3. 기능성 및 소모성 부품

② 법 제30조의5제5항 및 규칙 제40조의12제2항에 따른 대체부품의 규격 및 재료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 등은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 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대체부품의 부품두께, 단차 및 간극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2. 대체부품의 인장강도, 굴곡변형, 굴곡강도, 전단강도, 충격강도 및 선형 열팽창계수 등의 측정값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3. 코팅(프라이머 및 장식용)의 내열성, 접착력, 내화학성, 내충격성, 내부식성 등의 측정값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③ 법 제30조의5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대상과 해당 부품의 세부인증기준에 대하여는 제14조에 따른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성능시험대행자가 운영하는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의2.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1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1의4. "미완성자동차"란 차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구조·장치를 갖춘 자동차로서 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제작·조립 공정이 필요한 자동차를 말한다.

1의5. "단계제작자동차"란 미완성자동차를 이용하여 제2호에 따른 운행(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이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1의6. "구동축전지"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를 말한다.

1의7. "커넥티드자동차"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 그 밖의 장치·시설·장비·기기 등과 무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형식”이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을 말한다.
4의2. “내압용기”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로서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의3. “자동차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서비스 거부,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으로 자동차의 부품・장치・정보통신기기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자동차제어 정보 등을 위조・변조・훼손・유출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4의4.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란 자동차 사이버공격・위협으로부터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4의5.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로서 자동차에 설치되는 것을 말한다.
4의6.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를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5.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9.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사고기록장치”란 자동차의 충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전후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능을 말한다.
11.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물리적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표준정비시간”이란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가 정하여 공개하고 사용하는 정비작업별 평균 정비시간을 말한다.
13.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으로 분류처리한 경우를 말한다.
가. 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나.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다.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기로 분류한 경우
14. “자동차경매”란 제60조에 따라 경매장을 개설하여 자동차(신조차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경매(競賣)의 방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경매를 포함한다)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신규등록)

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

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제8조의2에 따른 고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인 경우
2.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제작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 인도 이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인 경우

② 시·도지사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 작성에 필요한 자동차 제작증 정보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하며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30조의2(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①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부품이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부품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 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부품제작자등이 부품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부품의 제원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부품에 부품자기인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부품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확인한 결과 등록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자동차제작자등이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에 장착된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는 부품자기인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의5(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 등)

① 대체부품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한다.

② 삭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정하여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대체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이하 "품질인증부품"이라 한다)의 제작사 등은 인증받은 사실을 해당 부품에 표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대체부품 성능・품질의 인증기준・인증방법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6. "책임공제(責任共濟)"란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7.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나.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다.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배상(제30조에 따른 보상을 포함한다)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8.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
   나.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제30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지원하는 업
   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사업: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
   라.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 제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등의 재활을 지원하는 사업
9. "자율주행자동차사고"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에 그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동차사고를 말한다.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 및「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 및「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4.「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5.「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④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면제)

①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제5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해외체류 등으로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정하여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자는 면제기간 중에는 해당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자가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행중지기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가입자등은 보험회사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등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요건은 통계작성 조직 및 예산, 통계작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데이터처장이 인정하는 통계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지정통계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지정통계를 지정하거나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지정통계 지정의 절차 및 방법과 제3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1항 또는 제 2항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차량충당조건)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이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차량충당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폐차의 대상, 기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품질인증을 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및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로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구매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실시할 경우 품질인증의 대상·기준·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 삭제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
4.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⑨ 제8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 제5호 및 제6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투자성 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할 때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조정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분쟁사건(이하 "소액분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6조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6조제3항에 따라 서면통지를 받거나 제36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일 것
2.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